

얼굴이라 인권센터

인권센터 주춧돌이 되어주세요!



인권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인권센터는 순수한 시민기금 10억을 모아 만들 예정입니다.
 국가나 대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고 시민들이 십시일반 보태어 만드는 모두의 인권센터입니다.
 작다고 망설이지 마세요. 만원씩 10만 명이면 10억이 됩니다. 작은 정성이 모여 인권의 힘을 발휘합니다.
 CMS(자동출금)와 계좌이체 모두 가능하며, 나누어 낼 수도 있습니다.
 소속단체, 가족, 친구, 자녀들에게 주춧돌을 선물하세요!

주춧돌을 놓아 주신 분들은 금액에 관계없이 **돌**에 새기겠습니다.

주춧돌 계좌: 신한은행 100-025-564580(재단법인 인권재단 사람)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가 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 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 물이는 가라.

생각들

우리 안의 괴물

정상훈

사라졌다.

입은 있으되 말이 사라졌다

아니, 말은 많은데 정직한 말은 자취를 감췄다

감는다.

눈은 있으되 보지 않는다

무엇이 진실인지 애써 외면한다

단혀 있다.

귀는 있으되 듣지 않는다

소통은 그저 허울일 뿐이다

굴린다.

머리는 열심히 굴린다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지 굴리고 또 굴린다

살핀다.

눈치도 열심히 살핀다

남작 옆드려 뒤통수 주울 것이 없나 주위를 살피고 또 살핀다

하여 거울에 비친 물골 흉측하기만 하다.

없다.

진정성을 볼 수 없다

부끄러움을 볼 수 없다

죽어간다.

무너진다.

애써 지켜온 아름다운 가치들이 살처분 되고 있다

침출수에 오염되고 있다

무관심인가? 체념인가? 지쳤는가?

인내하고 있는가? 때를 기다리는 것인가?

모두 아니라면 무엇인가.

만들어야 한다.

정직한 말이 살도록 입을 열게 하자

진실을 보도록 눈을 뜨게 하자

소통을 하도록 귀를 열게 하자

굴리고 살피는 짓 부끄러운 짓 거부하고 이제 그만 Stop

그리고 깨어 있자.

뼈 속까지 깨우고 깨어 기억하고 기억하자

지금부터

이 시를 쓴 인권위 직원은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다. 인권위는 징계의결 서에서 이 시가 위원회에 대한 모욕성 비판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누가 보아도 인권위가 괴물이 되었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 표현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정신
잡
테기는 가
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
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
붙이는 가라.

표지이야기

내가 생전 처음,

인권위에서 들었던 말.

“세상엔 아직 좋은 사람도 많아요”

아직은 희망.

안녕. 인권위.

본지는 세계인권선언의 취지와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연의 설립 취지를 망각하고, 인권이 아니라 이권과 정권의 수호자가 되려는 현 국가인권위원회의 퇴행을 걱정하며 본지는 제작되었습니다. 「거꾸로, 인권」이 더 이상 발간될 필요가 없도록 하루 빨리 국가인권위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길 희망합니다. 저작권법과 별개로 본지에 실린 기사의 무단전제와 복제를 적극 권장합니다.

이 달의 독자

“「거꾸로 인권」 2호가 나온다니 싱송생송합니다.”

금세기(인권위도 막가는군 병들면 터지리 거꾸로 2가 1331)

올초에 「거꾸로 인권」을 읽었습니다. 「인권」과 한통속인 줄 알았습니다. 인권위에서 발행하는 「인권」을 읽으며 인권을 조금씩 배우기도 했지만 쓸쓸하기도 했기 때문이지요. 잡지에서 인권현안에 대해 다루고, 인권에 대해 다양한 접근과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듯한 글들이 많지만, 그래서 가식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약간의 검열을 경험한 기고자들의 이야기도 들어서인지 더욱 그러했습니다. '인권위원장이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명언을 하는 인권위의 현실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볼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경찰서에 쫓긴 「인권」 잡지의 역할을 조금이나마 기대하면서도, 이것을 보고 경찰들은 얼마나 콧방귀를 뽀개? 인권이란 원래 말만 번지르~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말입니다. 다시 2권이 나온다니 즐겁기도 하고 싱송생송하기도 합니다. 역시 뒷말보다는 직접 보여주는 게 더 속 시원한 것일까요?

이 달의 신조어

현병스럽다

형용사. 시종일관 임명권자의 의중을 헤아린다는 의미. 주변의 쓴소리나 비판에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중의적 표현으로 쓰임. 용례: 최근 보궐선거 이후 측근들이 더욱 현병스럽게 움직이고 있다.

병철답다

꿈수에 능하다는 의미의 직설적 표현. 비유적 의미로 대부분의 정보를 측근끼리만 공유하고, 편가르기에 능하다는 뜻도 있다. 유사어는 '속보인다'.

편집자가

금세기 독자에게

「거꾸로 인권」이 준 통쾌함을 저도 잊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만든 사진작가들의 노력도 고맙습니다. 이번에 인권위 설립 10주년을 맞아 「거꾸로 인권」 2호를 만들며 '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도 싱송생송했습니다. 10주년을 축하해줄 상태 아닌 인권위를 보며 '이렇게 돈을 써야 하나', '이렇게 노동을 들일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했지요. 하지만 기득권 세력의 목소리만 가득한 세상에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내도록 했던 것이 인권운동의 뉘이었던 것처럼, 인권위에 대한 올바른 목소리와 비판의 목소리가 시민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권위 내부에도 미약하나마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마음으로 「거꾸로 인권」 2호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인권을 향한 우리의 열망'이 조금씩 모습을 그릴 수 있도록,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 공동행동 드림

'내가 해봐서 이는데 정부' 출범 이후 예산절감과 발행부수 조정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개인구독 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언제 해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애타게 해봐서 안다니까, 이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휴먼필	2	동성에 혐오증, 웃지 않을 수 없다 이종걸
「거꾸로, 인권」이 만난 사람	4	“안기부 터에 인권평화센터를 만들고 싶다” 나인권
특집		열 살 인권위에 바치는 弔詞
	8	인권위 설립 10주년, 무엇을 남겼나 명숙
	14	나는 인권위원이다? 편집부
	18	국가인권위원회, 이것만은! 김형완
시선	22	평화 강정 한금선
길에서 만난 세상	24	쌍용 그리고 와락 정택용
	29	퀴즈로 푸는 인권위, 나는 꿈수다
화제	30	어느 난민 가족의 저녁식사 정선수
기획		징계 그리고 희망
	32	자기 부정과 위선이 빛은 지독한 난센스 편집부
	34	그들은 징계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38	인권위 공무원들의 아름다운 합창
	40	정직한 동행, 그들이 궁금하다
이슈	42	도가니 사건, 인권위가 했어야 할 일 홍성수
현장	44	85는 김진숙의 크레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홍진훤 노순택 김홍구 이광수
인권위박 소식	48	선관위, “유명인이 투표 권유 할 수 없다” 방침에 비판 봇물 등
이달의 독자		“「거꾸로 인권」 2호가 나온다니 싱송생송합니다”



동성애 혐오증, 웃지 않을 수 없다.

글 이종걸

성소수자가 무엇인지 물어본다.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들을 일컫는다고 답하니, ‘아, 그거 불건전한 거잖아.’ 하며 미간을 찌푸리며 돌아가 버린다. 퇴근 무렵 서울광장 앞에서 금연관련 지킴이를 하시는 한 분이 성소수자가 무언지 묻는 질문에 위처럼 말했더니 이렇게 동성애 혐오가 가득한 말로 돌아왔다. 그날 이분을 만나게 된 배경은 이렇다.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할 사유에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관련 부분을 넣느냐 빼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에 성소수자 단체들이 지난 10월 12일부터 ‘성소수자 1인 시위’를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의회, 서울광장에서 진행했다. 당시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이하 친구사이) 회원 한 분이 ‘성소수자가 차별받지 않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달라!’라는 피켓을 들고 서울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질문 하나에 나는 불건전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가정’과 ‘성’에 대한 가톨릭의 가르침에 반하는 사람이 되었다. 친구사이가 함께하는 ‘소수자 주거원 확보를 위한 틈새모임’이 11월 하순 가톨릭 청년회관 ‘다리’에서 워크숍을 하려고 대관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다. 동성애 단체인 친구사이가 포함되어 있어 가톨릭의 가르침에 반하는 듯한 오해를 살 수 있어 대관을 불허한다고 통보한 것이다. 이제 친구사이 사무국장 신분으로는 ‘다리’에 입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불건전한 사람, 불편한 기억

이렇게 종교의 벽을 두텁게 느끼고 있을 무렵 틈새모임의 대응에 적극적인 지지를 밝힌, 천주교 연구자이자 신자인 분으로부터 고마운 메일을 받았다. 동성애 혐오증은 종교 교리를 사유(思惟)없이 허용함으로써 받아들이고 특정 문구만을 맹목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증세가 아닌가 싶다.

지난 10월 25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결정에 따르면 나는 선정적이고 유해한 표현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다. 11월 24일 개봉하는 영화 <REC>의 포스터와 예고편이 심의에서 ‘선정적이고 유해하다.’는 이유로 심의가 반려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이 몹시(!) 화나지는 않지만 내가 좋아하는 표현물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현물보다 정말 선정적이고 유해한지 묻고 싶다. <REC>는 동성애자의 사랑을 다룬 퀴어 멜로 영화로, 주인공 영준과 준석이 만난 지 5주년을 기념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기 하면서 펼쳐지는 연애이야기다. 게이 커플의 사랑을 영상으로 담는 장면이 주된 스토리인 이 영화의 포스터가 서로의 사랑을 표현하는 포옹장면이 아닌 무엇으로 바뀌어야 하는 걸까? 영화 포스터와 예고편은 본 영화와 달리 연령 구분 없이 공개되는 것이기에 청소년 유해여부만을 판단한다.

영등위는 남남 커플이 침대 위에서 상반신 노출 상태로 포옹을 하고 있는 장면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고 선정적이라고 여긴 것이다.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남남 커플이 상반신 노출 상태로 침대 위에서 포옹하는 장면이 유해하다는 것에 어느 정도 수긍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유해성’에 대해서다. 남남이 문제인 것인지, 성인 둘이 침대 위에서 상반신 노출 상태로 포옹하는 것이 문제인 것인지 묻고 싶다. 영등위는 이에 대해 정확하게 의견을 내놓지 않는다. 내놓고 동성애를 차별하고자 하지 않는 것인지... 난감하다.

더욱 놀란 것은 지난 10월 19일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조직된 학생생활지도 정책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수정안에 차별 사유로 성적지향을 포함하자 10월 19일, 20일, 21일 동시다발적으로 보수 일간지들이 동성애 혐오증을 커밍아웃한 일이다. 국민일보, 문화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등은 일제히 사설을 통해 사회에서 아직 논의가 안 된 동성애를 학교에서 허용할 셈이냐고 너나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동성애 혐오를 표현했다. 학교 현장에서 친구들로부터 동성애자

임이 밝혀져 왕따를 당하고 동성애자를 죽여야 한다는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는 교사들로 인해 자퇴와 자살 등의 사고로 이어지는 현실이 존재하기에 자문위는 이에 대한 차별을 방지해야 한다는 조례안의 취지를 밝혔다.

한국 사회 주요 일간지들의 이러한 동성애 혐오증은 국제단체들에 이를 알리는 것조차 부끄러울 지경이다. 한국 외교통상부가 지난 6월 17일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결의안 채택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신문들은 어떠한 의견을 냈을까 싶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2010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한 발언을 이 신문들에게 건네고 싶다.

문화적 태도보다 보편적 인권이 우선

“70개국 이상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범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회적 통념의 뿌리가 깊다는 것 물론 알고 있습니다. 사회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역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적 태도와 보편적 인권이 대립할 때에는, 보편적 인권이 반드시 우선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한국사회에서 동성애 혐오는 주요 권력을 가진 세력들로부터 비롯한다. 주요 언론, 보수 기독교 세력, 표현을 통제하려는 심의 기구들이 바로 그들이다. 하지만 이들의 동성애 혐오증은 전형적인 논리적 오류와 비판적 사유 없는 맹목적 종교 교리해석에 기대어 자신들의 문제점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 병적인 동성애 혐오증을 바꾸는 방법은 사실 많지 않다. 다만 우리 성소수자는 그들을 부정하기보다는 좀 더 알고 싶고 만나고 싶다. 웃는 얼굴로 마주하며 한마디 건네고 싶다. 우리는 어디에나 있다고, 너무 뭐라 하지 말라고, 상처주지 말라고.

이종걸 님은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기부 터에

인권평화센터를

만들고 싶다”

글 사진 나인권



갈 때는 천릿길이었으되 올 때는 만릿길이었다. 인권센터 건립을 위한 박래군의 여정은 제주 강정마을에서 남산 안기부 터까지 촘촘히 이어졌다. 처절한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이들에게서 희망을 보았고, 상처의 역사를 껴안고 사는 이들에게서 분노를 삼켰다. 보름 만에 무려 4,000km에 이르는 대장정을 몰아치고도 들리지 못한 곳이 너무 많으며 안타까워하는 그 남자. 그는 천상 인권운동가로 살아갈 팔자다.

10월 21일 밤, 박래군은 서울광장 옆 재능교육 농성장에서 노숙했다. 이곳은 부당하게 해고당한 학습지 노동자들이 1,400일째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는 싸움터다. 4년 가까운 투쟁 속에서 재능교육 해고자들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집회를 열고 있다. 재능교육 농성장이 부산 한진중공업으로 떠나는 희망버스의 출발점이 된 이유다. 부산이든 서울이든 해고자들의 요구는 단순하고 명쾌하다. ‘노동3권 보장하고 단체협약 원상회복하라’

10월 22일 오전 10시, 박래군은 용산참사 현장을 찾았다. 2년 전 자신이 용산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으로 머물렀던 곳이다. 망루도 불꽃도 모두 사라진 남일당 자리엔 주차장이 들어섰으나, 당장이라도 빌딩이 올라갈 것처럼 떠들썩했던 용산4구역은 여전히 공터로 남아 있다. 박래군은 희생자들의 온기가 서려있는 철거 현장을 둘러보며 쓰라린 기억을 떠올렸다. 죽은 자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지 못했기에 살아남은 자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 보였다.

“여길 톡톡히 보세요. 2년 9개월 동안 아무 것도 안했잖아요. 이럴 시간에 철거민과 대화했으면 그런 비극은 없었을 겁니다. 앞뒤 따져보기도 전에 진압하고, 죽이고... 이게 ‘재개발’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이 정권의 폭력입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이원호 사무국장은 불에 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남일당 망루에서 숨진 이상림씨가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으로 용산구청이 이 씨에게 회신한 공문서였다. 용산구청은 이 씨가 제출한 민원에 대해 “용산 4구역 재개발에 대한 협의가 안 됐다고 해서 관리처분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후일 법원은 관리처분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나라 공무원이 이 모양이고, 이 나라 사법부는 늘 뒷북이다.

용산참사는 탐욕이 부른 재앙일지도 모른다고 박래군은 말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이 돈이면 다 된다는 정권을 만들고, 그 정권이 돈 가진 이들의 이해에 부응하기 위해 공권력을 앞세워 밀어붙인 ‘인재’라는 것이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문제는 마구잡이로 띄워 올린 애드벌룬에 대한 사후평가일 것이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지천으로 난무하던 뉴타운 공약을 따져 묻는 시민은 그리 많지 않다. 박래군이 시민법정을 열어 유죄판결을 내린 용산참사 관련자들이 영전을 거듭하는 몰염치가 이 정권에서 계속 자행되고 있다.

박래군은 경찰청 맞은편 순화동 재개발지구도 살펴봤다. 철거할 때는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였지만 기초

공사조차 시작하지 않아 폐허처럼 변한 모습이 용산 4구역을 빼닮았다. 이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윤용현 씨는 이미 열사가 됐고, 그냥 물러설 수 없다고 버티던 지식준 씨는 망루에서 떨어져 영구 장애인이 됐다. 누군가를 죽이지 않는 재개발은 과연 불가능한 것일까? 박래군은 약자에 대한 배려 속에서만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센터는 인권운동과 시민이 만나는 허브

박래군의 다음 목적지는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전국 비정규직노동자대회였다. 이곳에서 부스를 차려놓고 인권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홍보할 계획이었다. 그가 보름에 걸쳐 진행한 천릿길 행군의 최종 목적지도 인권센터로 이어져 있다. 서울광장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는 그를 붙잡고 인권센터의 의미와 가능성을 물었다. 늘변이지만 자신감이 넘치는 박래군 특유의 화법 속에서 그가 인권센터에 애정을 쏟는 이유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동안 인권운동은 시민들과 떨어져 있었어요. 이대로 가면 인권활동가들이 고립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인권센터는 인권운동과 시민이 만나는 허브가 되려고 합니다.”

눈앞의 목표는 영세한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공간 확보다. 서울 4대문 안에서 그만한 사무실을 얻는데 필요한 돈은 어렵잡아 10억 원이다. 대다수 인권단체의 뼈뺀 살림살이를 감안하면 다가서기 어려운 거액이지만 박래군은 느긋하다. 한 사람이 하루 100원씩 100일간 모으면 1만원이 되고, 그런 사람이 1만 명이면 1억 원이 된다는 셈법이다. 세인들이 헛웃음을 치고 돌아설 ‘개미의 요술’로 박래군은 벌써 2억 4천만 원 이상을 모았다. 10억 원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올해 안에 어떻게든 인권센터의 근거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에서 서울까지 간단치 않은 인권현장을 돌아보며 인권센터 건립은 더욱 절박한 목표로 다가왔다.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이 인권과 노동을 유린하는 상



황에서 이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는 인권진영의 보루가 필요해진 것이다. '인권의 이름으로 한국사회의 모순을 해소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그가 꿈꾸는 인권센터의 미래는 인권현장과 맞닿아 있다. "현장에서 보니까 과거사 청산 실패, 소수자 차별, 반공체제, 노동운동 탄압... 이런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권운동이 시민들과 더욱 넓게 만나야 하고 시민들과 함께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권침해 현장은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박래군은 천릿길의 마지막 여정을 남산으로 잡았다. 친일과 반공, 고문과 의문사의 현장에서 인권센터의 씨앗을 심고 싶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는 대표적인 인권유린의 현장인 구 국가안전기획부 본관(현 서울유스호스텔) 자리에 인권평화센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역대 정부가 기기묘묘한 논리를 적용하며 퇴색시키려 했던 역사의 상흔을 솔직하게 드러내자는 파격적인 구상이다. "남산 안기부 터는 서빙고 보안사 터, 남영동 대공분실과 함께 중요한 역사적 현장입니다. 이런 장소는 원형 그대로 보존하면서 후세를 위한 공간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안기부 터를 인권평화센터로 만든다면 시민들이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소중한 터전이 될 것입니다."

박래군이 인권센터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는 출범 10주년을 맞았다. 박래군은 10여년 전 국가인권위를 만들기 위해 한겨울 눈보라 속에서 철야농성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기에, 현 정부 들어 거침없이 추락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에 대해 할 말이 많았다. 어찌 보면 국가인권위가 초심을 잃지 않고 제 길을 걸어갔다면, 지금 박래군이 인권센터를 열자고 뛰어다니지 않았을 지도 모를 일이다.

"인권위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견제하고 감시할 힘이 인권공동체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권의 입맛대로 인권위원을 임명하고 인권위가 오히려 반 인권에 편승하는 코미디가 벌어진 거지요. 이제 시민사회 네트워크로 인권상황에 직접 개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인권센터 건립은 꼭 필요합니다."

박래군의 천릿길은 수많은 조작간첩 사건이 탄생했던 구 안기부 대공수사국 앞에서 끝났다. 소감을 묻자 서슬 퍼런 공안시대에 영문도 모른 채 이곳으로 끌려왔을 피해자들이 떠오른다고 했다. "한밤중 눈을 가린 채 차에 태워져 철계단을 오르던 그 남자, 그 여자는 얼마나 두려웠을까?" 살아서 돌아오기 어렵다던 공포의 '간첩공장'에서 박래군의 인권센터는 힘찬 날갯짓을 시작했다.

부산시민에게
 '절망버스'다.
 쓰레기 버리고
특집
 망가뜨리며
열 살 인권위에 바치는 弔詞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데
 평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위 설립 10주년, 무엇을 남겼나

글 명숙(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다. 한낮에는 따뜻하다가도 아침저녁으로는 춥다. 11월이 이러니 12월은 얼마나 추울까? 더구나 텐트하나 없이 맨몸으로 온 바람을 견뎌야 한다면?

“인권활동가는 쓰러지고 정부는 뺏뺏하고”는 당시 모습을 담은 <인권하루소식> 기사 제목이다. 인권단체 대표자들이 정부여당인 민주당을 찾아갔지만 별 성과가 없었고, 박래군 농성단 상황실장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고, 유가협 회원 오영자님은 기력이 떨어져 링겔을 맞았던 모습을 그렸다. 2000년 말 국가인권위원회를 제대로 설립하자며 명동 들머리에서 노숙 단식농성을 하던 인권활동가들. 추위와 배고픔 따위는 감수할 정도로 ‘제대로 된 인권기구’가 절실했다.

그때, 아니 지금도 우리가 꿈꾸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국가인권기구가 나서서 인권침해사건의 현장들을 둘러보고, 구제 및 개선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해당 기관에 권고하고, 법제의 개

정을 권고하는 모습이다. 경찰이나 행정청에서 차별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찾아가 쉽게 진정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잘못된 관행에 대해 모든 국가기관이 그 정도는 위법도 아니니 관찮다고 할 때, 그것은 한 사람의 삶과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니 인권침해라며 시정을 권고하고, 우리사회 인권기준을 한 단계 올리는 것이다.

길고 긴 10년, 어떻게 걸었나

우리 사회에서 인권위가 그동안 어떠한 역할을 했지는 인권위법 19조¹⁾에 정해져있는 인권위의 업무에 대한 평가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중에서 주요한 업무가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이다. 진정사건을 인권위가 어떻게, 얼마만큼 조사하고 의미 있는 권고를 하였는가 평가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진정사건이 아니더라도 주요한 인권현안에 어떤 입장과 의견을 표명했나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인권위의 구성과 운영이 얼마나 독

- 1) 제19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일 2001. 11. 25]



립적이고 민주적이었나이다. 네 번째는 인권위가 시민사회와 얼마나 소통했느냐는 점이다. 인권위가 국가기구라는 점에서 시민사회와 소통하지 않으면 인권감수성을 갖고 인권의제나 인권기준을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진정에서 인권침해가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다. 그리고 그중 구급시설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찰이다. 이는 여전히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가장 광범위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인권위가 정부에 대해 날카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그러나 여전히 진정사건에 대한 통계나 분석이 인권침해나 차별이냐만을 구분할 뿐 침해 내용이나 차별 내용을 유형화하고 있지는 않다. 침해사건 유형별 분류가 대상기관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기관에 대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 인권침해가 나타나는지는 보여주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분류를 함으로써 인권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업무계획을 수립하는데 근거자료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권위법상 조사대상을 헌법 10조에서 22조로 한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

회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차별이라는 형태로 진정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러한 구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55,089건 중 64.4%인 33,458건이 각하되었고, 기각이 26.8%로 13,935건이다. 거꾸로 말하면 6% 정도만 권고나 구제조치 등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에 대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인권위의 관할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다른 하나는 인권위가 해당 사항에 대해 조사하거나 권고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인권위법 상 인권위가 조사하거나 권고할 수 없는 영역이라 어쩔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실제 인권위가 발행한 2009년과 2010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2009년 9.6%, 2010년 11.5%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각하나 기각사건의 유형별 통계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 진정해봐야 각하나 기각이라면, 누가 인권위에 가졌는가. 실제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는 늘어나고 있지만 인권위는 속수무책이거나 인권침해 현실을 외면하고 있

구분	접수	총결	수사의뢰	합의권고	조정	권고	고발	징계권고	법률구조	긴급구제	합의총결	기초조사중해결	각하	이송	기각	조사중지
합계	55,089	51,991	19	5	20	2,013	68	88	11	9	897	2	33,458	1,052	13,935	414
(%)	-	100.0				3.9	0.1	0.2			1.7		64.4	2	26.8	0.8
침해	42,444	40,538	18	5	1	1,301	63	85	11	9	567	2	25,778	953	11,410	335
차별	10,747	9,603	1		19	690	5	3			325		5,951	89	2,444	76
기타	1,898	1,850				22					5		1,729	10	81	3

(2001. 11. 26. ~ 2011. 6. 30. 2011년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제출 자료)



음을 알 수 있다.²⁾ 따라서 인권위법 상의 각하 사유를 정하고 있는 인권 위법 32조에 사유 10가지가 타당한 것인지 살펴보고 개선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32조 각하사유 중 4호이다. 진정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으로부터 1년의 기간이 경과된 경우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정한 것은 인권위의 구제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건이어야 한다는 점과 과거사 청산기구와의 변별성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위원회의 권고는 형사 처벌의 공소시효와 다름뎌더러 위원회의 구제조치 등의 권고는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구제하는 것은 물론 향후 그 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더라도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재발을 막을 수 있다. 더구나 현병철 ‘무자격’ 인권위원장과 친정부적 인권위원들이 임명된 이후 정부의 인권침해적 행위에 대해 1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경우가 많았다. 쌍용차 노동자파업 투쟁 당시 민간인에 대한 사찰, 국무총리실의 김종익 씨 사찰, 철도공사의 조합원에 대한 사찰 등은 1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했다. 위 사례들은 인권위법의 한계를 들어 정부 눈치를 보며 각하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인권위가 빛나던 정책권고, 의견표명

인권위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는 개별적인 진정사건에 대해 구제조치를 권고할 뿐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바꾸어야 할 인권과제를 국가에 제기하는 정책권

고 및 의견표명이다. 지난 10년간 인권위 조사국의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은 총 111건, 정책교육국의 권고 및 의견표명은 총 268건이다. 이중 의미 있는 권고를 거칠게 자유권, 사회권, 차별 분야로 나눠보면 <표1>과 같다.

이렇게 추려본 이유들은 첫째, 주요 인권현안에 대해 인권위가 ‘인권의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여기서 주요 현안들이 인권현안인지 아닌지 불투명할 때가 있다. 그러할 때 인권의 기준과 시각들을 한국사회에 제시하는 역할이 인권위의 역할이다. 이라크 전쟁 파병에 대한 의견 표명, NEIS에 대한 의견 표명, 국방부 불온서적 지령 관련 의견표명이 대표적이다. 둘째, 잘못된 법제도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정책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인권증진을 위한 관행, 법 제도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관련 실태조사와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 나간 권고는 기간제법 제정안 및 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공공부문 청소년용역근로자 인권개선 정책권고, 스포츠 인권 상황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이다. 셋째, 인권감수성과 차별 감수성을 높인 결정이다. 사회의 오랜 관습으로 인한 인권침해나 차별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 ‘인권’의 시각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호주제는 위헌이라는 의견 표명,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7조 동성애차별 삭제 권고, 입사지원서 차별 항목 권고,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에 대한 의견 제출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밖

에 국제인권기구가 개선을 권고한 내용들로서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권고 등을 들 수 있다. 열악한 한국 인권상황에서 이런 목록을 나열하다보면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정책 권고나 결정 이후 후속조치가 미흡하다. 좋은 권고를 하고도 기관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며 미리 자포자기한다. 기관을 직접 찾아가거나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낼지라도 실제 그것을 집행하고 있는지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는다. 가장 가까운 예로, 차별금

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지만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주요 인권침해현장으로 달려가고, 필요하다면 실태 조사를 기획해야 하는 것이 인권위의 임무이다. 그러나 2008년 촛불집회 인권침해 감시활동 이후 주요한 인권침해현장에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진정이 들어오면 겨우 담당자가 현장에 가보는 정도이다. 밀도 있는 후속 조사계획도 없다.

<표1>

자유권	사회권	차별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2002.2.20)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권고(2003.2.10.)	크레파스에 살색 표기는 차별(2001.11.)
이라크 전쟁 파병에 대한 의견표명(2003.)	기간제법제정안 및 파견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2005.4.11)	호주제는 위헌이라는 의견 표명(2003.1.)
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표명(2003.5.12.)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2007.2.15)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7조 동성애차별 삭제 권고(2003.4.)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대체법안 마련(2004.1.12.)	에이즈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2007.2.25)	입사지원서 차별 항목 권고(2003.6.)
국가보안법 폐지(2004.8.23.)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2007.9.6)	생리공결제 도입 권고(2005.12)
사형제 폐지 의견(2005.4.6.)	공공부문 청소년용역근로자 인권개선 정책권고(2007.9.10)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2006.7.24.)
양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권고(2005.12.2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에 대한 의견표명(2007.9.17)	스포츠 인권 상황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2008~2009)
서울구치소 여자수용자에 대한 성적 괴롭힘 직권조사결과 발표 및 권고(2006.3. 7.)	사업장 전자감시로 인한 인권침해 개선방안 정책권고(2007.11.12)	군형법 92조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에 대한 의견 제출(2010. 10.25)
행형법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2006.6.12.)	빈곤가구 단전단수조치 인권개선 정책권고(2007.11.36.)	
전의경제도 인권상황개선을 위한 종합 권고(2007~2008)	이주노동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의견제출(2008.5.26.)	
집회금지통고제도 및 사전차단조치 개선을 위한 법령 및 관행 개선 권고(2008.1.28.)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 정책 권고(2008.4.14.)	
국방부 불온서적 지령관련 의견표명(2008.8.21)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2008.9.23.)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촛불집회시위 관련 직권 및 진정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2008.10.27.)	강제철거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2009.2.12.)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2009.1.22)	푸제는 관련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권고(2009.6.15.)	
정보통신심의제도에 대한 의견표명(2010.9.30)	사내하도급근로자 인권개선 권고(2009.9.3.)	

2) 2010년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인권침해 진정건수는 2007년 62건, 2008년 102건, 2009년 97건, 2010년 110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인용률은 낮아지고 각하률은 높아지고 있다. (인용율 2008년 14.2%, 2009년 2.3%, 2010년 2.0%, 각하율은 2008년 55.5%, 2009년 63.0%, 2010년 90.0%로 증가)



인권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유엔인권기구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엔인권기구의 권고와 보고서를 번역하는 것이 기본이다. 최근 아동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정부 보고서 심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권고조치 번역되어 있지 않다.

앞서 말한 활동 등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과 조사 정책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인력을 충원하기는커녕 인원을 축소하였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인력을 다시 충원하기로 하였지만 인력 축소가 사실상 인권위 길들이기, 독립성 훼손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인권위 구성의 독립성 확보에 있어 주요한 축인 인권위원을 무자격 친정부적 인물로 채웠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인권위법에 명시된 인권위원의 자격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무자격자를 연이어 임명하였다. 이런 인권위원들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에서 유엔인권기구의 권고에 상반되는 발언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현병철 인권위원장이다. 그는 청와대의 임명 배경인 '조직 관리에 능한 사람'으로서 직원들을 자신의 친정부적 입장으로 출세우기에 여념이 없었다. 위원장의 비민주성에 항의하는 사람들을 '사실상' 해고하거나 징계하였다. 또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포함한 정부의 주요한 인권침해에 눈감으며 면죄부를 주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PD 수첩 사건 기각, 박원순 명예훼손사건 의견표명 기각, 야간집회시위에 대한 현재 의견표명 기각, 김종익 씨 국무총리실 사찰, 한진중공업 농성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의견표명 기각 등이다. 2010년 한국을 방문한 프랑크 라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사항도

한국인권위는 기각했을 뿐 아니라 인권위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한 상임위원들과의 면담 요청도 거부했다. PD수첩 사건이나 박원순 명예훼손 사건 등은 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났으니 인권위가 법원보다 낮은 인권기준을 갖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물론 이명박 정부 이전에도 인권위원 인선은 문제가 많았다. 인권단체가 꾸준히 밀실인선에 대해 비판해왔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법조인 중심의 인권위원 인선으로 국가인권기구 가이드라인의 핵심인 다원성을 실현하지 못하였으며, 결정례를 실정법 위주로 판단하는 경향을 부추겼다.

독립성 훼손, 현안 침묵, 비민주적 조직운영

현병철 인권위원장 체제의 비민주성은 인사와 조직을 전횡하는 것 뿐 아니라 회의나 정책조사결정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전원위원회에서 위원장 의견과 다르다고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라며 회의를 갑자기 폐회하기도 하였고, 정책이나 조사결정에 대해 사무총장이 계통과 상관없이 특정 결정을 중용하기도 하였다. 전원위원회의 비공개 안전도 많아졌다. 물론 현병철 체제 이전에도 민주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었다. 국가기관임에도 회의록조차 공개되지 않았고, 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된 회의록에 공인인 인권위원들의 이름이 지워져서 공개되고 있다.

최근 인권위는 2006년 인권위가 만든 북한인권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북한인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인권에 충실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조언에 충실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을 조사방문할 권한도 없으면서 북한인권침해센터를 만들고, 북한체제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 북한인권기록보

존소를 인권위에 두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러니 다른 나라 인권활동가들이 한국의 인권위가 왜 북한인권에 주력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과 인권위 직원들의 출세우기식 조직운영은 인권위의 정책기능을 축소시켰다. 2010년 정책권고와 관련된 결정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정책 생산을 위해서는 꾸준히 인권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며 시민사회 및 인권단체와의 소통이 중요하다. 그래야 인권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눈치보기에 여념이 없는 지도부와 그에 따른 직원 길들이기는 승진과 인사고과에만 신경 쓰는 관료화를 부추기고, 직원들이 인권감수성과 진심을 갖고 인권현안을 다루는 것을 꺼려하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2010년 말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정책자문위원과 전문위원들이 집단 사퇴하고 인권위의 변화된 태도가 없어 인권단체들은 협력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 말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전국적인 사퇴 촉구 운동 이후 인권위 층마다 자동잠금 열쇠를 문마다 설치하였고, 2011년 초에는 인권위가 동아일보 기자에게 'ICC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회의)가 아시아지역국가인권기구모니터링단체인 ANNI의 입장을 고려조차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왜곡해서 전달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인권단체들과의 협력을 촉진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국제행사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2011년 초 있었던 국제인권조약기구의 NGO 컨설팅이전 컨퍼런스 행사 이후 인권단체와의 어떠한 후속 논의도 없었다. 정책기능이나 인권의제 설정을 위한 시민사회의 소통을 중시하지 않는 현병철 위원장 체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어

답답하다. 이렇다보니 2기 NAP(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권고안 작성에도 인권단체들이 함께 하지 않고 있다.

정책기능 축소와 시민사회와의 소통 부재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한국사회 인권수준을 바꾸기도 전인 2009년부터 인권위는 오히려 공든 탑을 무너뜨리고 있다. 인권현안에 대해 부결시키는 등 후퇴한 결정을 내는 인권위를 보며, 최근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는 것조차 꺼려하고 있다. 이러한 퇴행은 인권기구가 제 몫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려주었고, 그동안 이루어온 성과조차 인권운동의 힘과 인권위의 독립성이 아니면 지켜내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지난 8년간의 경험보다 최근 2년간의 경험이 우리에게 인권위의 역할을 더 확실하게 알려주었다.

인권위가 제자리를 찾으려면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소통해야 한다. 또 그래야만 조사나 정책권고도 제대로 할 수 있다. 인권위가 진정 약자의 벗이 되려면 인권위의 독립성부터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의 인선절차와 검증절차를 마련하고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권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인권위 직원들이 출세기에서 벗어나 인권을 다루는 전문가로서, 인권옹호기구 담당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인권기준에 맞는 인사정책 및 인력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인권위를 만들었던 열망이 사그라들기 전에, 시민들이 완전히 등을 돌리기 전에 오늘도 인권위가 제자리를 찾도록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인권위원이다?

정리 편집부

아무도 그 이름을 몰랐습니다. 2009년 7월 17일 오전 갑자기 ‘현병철’이란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가가의 세상을 뒤집는 호연지기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임명 직후 현 위원장은 일간신문 기자와 놀라운 인터뷰를 합니다. “학자로서 인권을 공부했지만 인권 위원회에 대해선 아는 것이 없다. 한 달 전까진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진행된다는 말은 들었지만, 어떤 직책인지는 몰랐다. 인권위원장 내정 사실은 오늘 아침에야 알았다”

역대 어느 장관도 “모르는 게 장점”이라는 취임 일성을 날린 선수는 없습니다. 가가가 사람 한번 제대로 고른 거죠. 인권위 출범 당시 3년에 걸친 독립성 논쟁, 민감한 결정을 두고 잇따라 제기된 인권위 존폐론, 엠비 정부에서 조직이 21%나 축소된 사태... 가가는 이 모든 걸 “모른다.”고 간단히 후려칠 수 있는 비기의 소유자를 깜짝 발탁합니다.

현병철 위원장의 취임식은 드라마틱했어요. 7월 17일 제헌절에 1차 취임식을 준비했는데, 인권단체 사람들이 출입문을 막고 반대했어요. 인권을 모르는 분이 인권위원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거죠. 할 수 없이 취임식이 3일 연기됐는데, 청와대가 취임식이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막후에서 지원합니다.

보수단체의 한 회원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모처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 행정관이 전화로 인권위원장 취임식을 도와

야 한다는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위 앞으로 와서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행사장에 들어가 인권단체의 시위에 맞불을 놓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인권위원장 취임식에 청와대 행정관까지 투입되는 놀라운 드라마가 펼쳐진 거죠.

“나는 청와대에서 파송한 사람”

가가는 인권위를 심각한 곳이 아닌 유쾌한 일터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들을 파격적으로 임명하려 했습니다. 가가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경남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김모 목사가 있습니다. 이 분이 어느 날 인권위로 찾아와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나는 후임 인권위원이 될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권위가 편향됐기 때문에 내가 와서 바로 잡으려 한다. 곧 청와대에서 나를 임명할 것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사주간지에 김모 목사의 황당한 ‘전력’이 보도됐습니다. 형사사건까지 연루돼 있다 보니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사태가 복잡해지니까 청와대에서 해명을 합니다. “임명권 행사를 한 적이 없다.” 아직 임명장을 안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 청와대 언질도 없이 인권위로 찾아온 김 목사는 뭐가 되는 거죠?

김모 목사 카드가 날아가고 등장한 사람이 김양원 목사예요. 이 양반은 오랫동안 장애인 시설을 운영했는데 돈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장애인 부부

에 대한 낙태 강요 건으로 장애인단체의 비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2008년 총선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를 신청했다 떨어진 전력이 있는데, 가가는 이런 분을 대통령 몫 인권위원으로 지명해 순식간에 인권위원을 ‘비례대표 낙천자’보다도 못한 직위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도 김 목사는 현수막을 걸고 잔치까지 벌였대요.

인권위원 자격이 없으니 하루 빨리 물러나라는 인권단체의 비판에, “나는 청와대에서 파송한 사람이다. 나도 인권을 위해 살아왔다.”고 강변했던 김 목사. 이 분이 인권위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2010년 제3차 전원위원회: 2. 22

야간시위 의견표명 건

김양원 위원 현재에서 이미 야간집회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입장이고 야간시위에 대해서 제청되어 있다고 하지만, 인권위원회에서 - 오늘 자료 준비하신 분은 고생 참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 구태여 그런 분위기가 되어 가는데 또 우리가 의견 제출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은 그 필요성에 비해서... 아까 북한인권과 비교가 됩니까는, 북한인권 같은 경우는 너무 심각하게 우리의 업무 자체를 다 빼앗기고 권리도 빼앗기고 일이 이제 손을 놔야 되는 입장인데도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입장에서, 이미 현재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불합치 결정까지 내리고 있는 분위기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견을 안 내는 쪽에 찬성하겠습니다.

2010년 제6차 전원위원회: 2010. 4. 26

박원순 변호사 사건 의견표명 건

김양원 위원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금년 초부터 상당히 첨예한 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헌법재판소라든지 법원에 의사 표명 하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 우리보다 더 전문적인 인권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정말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하면 완벽한 자료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안검사 출신의 최윤희라는 인권위원이 있어요. 인권위원으로 추천되기도 한나라당 윤리위원직을 수락했어요. 인권위법에 인권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

나 겸직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문제가 되니까 슬그머니 윤리위원을 사퇴했어요. 나중에라도 수습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합의 극치죠. 이 분은 전원위 출석률이 거의 바닥 수준인데, 이 분의 발언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2010년 제3차 전원위원회: 2. 22

야간시위 의견표명 건

최윤희 위원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계류중이라면 인권위원회가 의사표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초지일관된 제 입장입니다. (중략)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재판부가 모든 세세한 기록이나 내용을 가장 잘 압니다. 물론 우리 인권위원회는 인권에 관한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계류 중인 재판에 대해서 그 사안에 대한 완전한 자료나 증거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의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의사표명 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엠비 정부 등장 이후 인권상황이 후퇴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 분야에서 확인됩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불리는데, 그것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면 민주사회라 볼 수 없다는 얘기도요. 그런데 인터넷 누리꾼 미네르바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잡아넣고, 베스트셀러를 불온서적으로 규정하고, 이메일과 휴대폰까지 다 뒤지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심각하다고 말하는 거죠.

표현의 자유 문제를 얘기하자면 현병철 인권위는 거의 사이클링 히트 감이예요. 야간시위를 불허하는 집시법 관련 안건을 과감히 기각했지요. 아마도 밤에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잠을 자야 한다는 배려일 겁니다. 피디수첩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 건에 대해서도 단칼에 기각했어요. 당시 찬성이 5, 반대가 4였는데, 위원장은 정족수 6인이 안 된다며 기각했어요. 인권위가 기각한 사건이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인권위에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나, 눈 딱 감고 무

시하는 행태, 대단한 기개입니다.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정부의 명예훼손 사건도 5대5였는데 위원장은 자기 의견도 밝히지 않고 기각했어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도 시간만 끌다가 기각했어요.

2009년 제22차 (임시) 전원위원회: 12. 1

PD수첩 사건 의견표명 건

김태훈 위원 2008년 당시에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의심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때에 더군다나 여론지배력이 있는 공영방송에서는 이것이 광우병에 의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신중하게 가려서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고의로 조작해서 했으니, 이것은 언론의 선동이고 언론이 공적기관을 도외시한 아주 지탄받아야 할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선동적인 언론의 대표적인 것이고, 오히려 만일 우리가 의견을 준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 주어야 될 지경에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지는 안 하고 하여간 이것은 이미 사법부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극히 신중하게 해야지, 이렇게 의견을 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병철 위원장 지금 대체로 말씀 충분히 하셨고요, 더 토론해도 끝 없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의견들이 나와 있는데,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대체로 다섯 분이 의견을 내는 것을 얘기하셨고, 네 분이 의견 내는 것에 반대하셨습니다. 사무총장님, 이런 경우 우리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총장 김옥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고 운영규칙에도 같은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과반수는 여섯 분입니다.

현병철 위원장 그러면 내가 찬성하면 찬성이 되고, 내가 기권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네요? 그렇게 됩니까?

사무총장 김옥신 그렇습니다.

현병철 위원장 아, 어렵네요.

최경숙 위원 이럴 때 위원장님도 의견을 내셔야 됩니다.

윤기원 위원 오늘 참석을 못 하셔서 그러는데요, 지난번에 문경란 위원님께서 어떤 의견이셨습니까?

최경숙 위원 이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것인데요. 그때 윤남영 위원님께서 출장 가셔서 참석은 안 하셨고, 저와 문경란 위원님과 심의를 했는데 문경란 위원님도 특별히 말씀은 없으셨고 전원위원회에 상정하자 하셨고,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찬성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병철 위원장 그러면 제가 결정해야 되나요?

사무총장 김옥신 예.

현병철 위원장 그러면 이 안건은 일단 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0년 제4차 전원위원회: 3. 8

야간시위 의견제출 건

황덕남 위원 야간시위도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야 된다는 필요성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2010년 제5차 전원위원회: 4. 12

야간시위 의견제출 건

김태훈 위원 우리가 일일이 모든 안전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고, 특히 야간집회시위의 위험성이라 할까, 그 피해 상황이 극심한 점은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많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야간집회시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시다마는, 그렇다면 이 사건도 헌법재판소의 후속조치를 따르면 되는 것이지,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시 새삼스럽게 그에 대해서 의견을 주문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한태식(보광) 위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인 관심사이고 해서, 제 생각에는 헌법재판소에 공정성과 독립성과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어떤 결론을 내려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공정성과 독립성과 자율성에 부담을 주지 않겠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헌법재판소의 자율에 맡겨서 지켜보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2009년 12월 28일 인권위가 용산철거민 참사 사건을 다뤘습니다. 조사가 다 끝나서 이제 의견을 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11명의 인권위원 중 6명이나 의견을 내자고 하는 지경이라 현 위원장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표결을 하면 통과될 판인데, 용산 사건은 가카께서 아주 싫어하는 민감한 사안이었잖아요. 정상적으로 회의를 하면 밀리게 생겼으니까 난데없이 "독재라도 할 수 없습니다."라며 퇴장해 버렸습니다. 가카의 호연지기를 체득한 솜씨라 할 수 있지요.

얼마 전엔 인권위원 3명이 긴급 발의한 안건이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장향숙, 장주영, 양현아 위원은 부산 한진중공업에서 300일 가까이 장기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진숙 씨에 대한 인권보호에 관한 의견표명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이 안건을 바라보는 인권위원들의 시각에서 오늘 인권위가 처한 위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2011년 제18차 전원위원회: 10. 19.

한진중공업 고공농성자 등의 인권보호 관련 의견표명 건

김영태 위원 인권위 운영규칙 제10조를 보면 의견표명은 상임위 권한이다. 안전상정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한태식 위원 부산시민에겐 '절망버스'다. 쓰레기 버리고 망가뜨리며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데 평화적이라고 할 수 있나. 김씨의 생존 문제는 따지더라도 다른 것은 인권위 위상을 무너뜨리는 일이니 나서선 안 된다.

윤남근 위원 김씨는 시설을 점거해 회사를 방해하고 있는 위법상태의 농성자다. 그런 지위에서 물과 배터리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지 의문이다.

홍진표 위원 한진중공업이 음식과 배터리 등 지원 약속을 어긴 것이 장기적이고 구조적이지 않다.

엠비 정부에서 인권위는 끝없이 추락했다. 4명의 인권위원이 이에 항의하며 사퇴했다. 그들이 밝힌 사퇴의 변에서 '거꾸로 가는' 인권위의 자기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인권위를 새롭게 디자인해야 할 필요성을 읽을 수 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인권의 길에는 종착역이 없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우리들 가슴 깊은 곳에 이상의 불씨를 간직하면서 의연하게 걸어갑시다. 외롭지만 땀땀한 인권의 길.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이 분노와 아픔은 보다 밝은 내일을 위한 작은 시련에 불과하다는 믿음을 다집시다. 제각기 가슴에 품은 작은 칼을 버리고 버리면서, 창천을 향해 맘껏 검무를 펼칠 대명천지 그날을 기다립시다.

안경환 2009. 7. 8.

현 정부 들어와서 촛불집회 사건, MBC PD수첩 사건, 미네르바 사건, 국가기관의 사찰활동, 양천경찰서 고문사건 등에서와 같이 정부가 공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남용한 한 예가 많습니다.(중략)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히 개별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 전반을 위축·냉각하여 악화시켰습니다. 본래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치주의란 국민이 국가권력에게 요구하는 것이지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지시하는 것이 아닌 이상, 국가인권기구의 핵심적인 기능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증진하기 위해서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활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윤남영 2010. 11. 1.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일을 사명으로 하는 인권위로서는 그 속성상 권력기관을 불편하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권력에 대해 쓴 소리를 하라는 소임은 인권위의 탄생이유이고 존립의 근거입니다. 인권위가 독립성을 외쳐대는 것도 바로 위원회의 독립성이야말로 인권지킴이의 소임을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정치적 잣대나 권력기관과의 불편 여부가 아니라, 철저히 '인권'이란 잣대로 매사를 판단해야 할 소임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고 일해 왔습니다. 인권위의 생명이 독립성이라면 인권위원의 독립성 또한 인권 업무의 생명과 같습니다.

문경란 2011. 11. 1.

인권위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현 위원장은 여전히 '인권위가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강변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다. 어느 국가권력과도 맞서는 인권위원장의 당당한 모습은 사라지고, 국가권력의 눈치를 보는 인권위원장의 초라한 모습만 남았다. 인권위를 창설하기 위하여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을 생각하면 치욕과 통분의 감정을 금할 수 없다. 인권위원장의 임명권자는 이명박 대통령인 바, 현재의 인권위 사태는 궁극적으로 이 대통령의 책임이다.

조국 2011. 11. 10.

국가인권위원회, 이것만은!

글 김형완(인권정책연구소 소장)



2003년 12월 1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제55주년 기념식 장면. 각 분야 인권침해 당사자와 옹호자들이 세계인권선언문을 낭독했다. 국가인권위가 다시 이런 장면을 연출할 수 있을까?

1. 본질적인 문제, 인권과 법

법이 인권의 모든 것을 해결하진 못하지만, 세계인권선언의 문구 그대로, “인권이 법치주의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때 법치주의란, 단순히 준법주의를 넘어 국가 공권력에 대한 법의 통제를 일컫는다. 종종 법률가들은 국민들이 법

을 잘 지켜 사회질서를 바로 세우자는 의미에서 법치주의를 내세우곤 하는데, 이는 법치주의를 완전히 오도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주권자인 국민이 법을 통해 국가권력의 오남용을 막자는 것이 법치주의지, 거꾸로 국가가 법을 내세워 국민을 지배하는 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권의 출발점이 법치주의라는 것

은 여러 가지 함의를 갖는다. 우선, 인권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 최소 요건이 바로 법치주의라는 점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군사독재, 권위주의 체제를 겪으면서 인권은 커녕 기본권, 나아가 권리일반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인권의 최소 요건이랄 수 있는 법치주의 실현조차 왜곡되거나 지체되었다. 그런 까닭에 마치 인권이 법과 등치되는 것인 양, 인권을 둘러싼 인식상의 왜곡이 다반사로 벌어졌다. 어느 인권위원이 “내가 법조인 경력 20년인데, 나 아닌 누가 인권전문가냐”라고 황당한 주장을 해도 그렇거나 받아들여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에도 법률가들이 태반을 차지했으며, 결정문도 법원의 판결문과 별다른 변별성을 갖지 못했으며, 국가인권기구의 운영원리와 형식 등 모든 면에서 인권전담기구로서의 제 꼴에 맞는 자기 정체성을 갖추질 못하였다. 일각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와 혼동하고, 또 헌법재판소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헛갈려 하는 이유가 그 반증이다. 이권이나 이익을 보장하는 권리일반과 시민권의 테두리 안에서 설정되는 기본권, 그리고 보편적 인권이 각각 무슨 차별성이 있는지, 그 수준과 층위, 역사와 구조에서 어떤 상관관계를 형성하는지 고민하는 흔적을 어디서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이제 올 11월이면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는다. 차분히 돌아보고, 성찰하고, 보완해서 비전을 제대로 세울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일부 쟁점을 인권의 개념과 맥락 속에서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인권위의 위상과 역할을 모색하고자 작성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여 법 적용과 활용의 수준을 제고하고, 입법미비 사항을 따로 추려내어 개정토록 하자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혁신적으로 제도를 재구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인권위원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이미 구비된 제도라도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다

시 말하거니와 본디 법이란, 어떤 규범이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최소도구이지, 이상형(ideal type)이 아니다. 따라서 이 글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중심으로 다루는 한, 우리사회의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한 인권의 ‘기본값’을 되새기고 확인하는 수준에 한정된다. 그 이상의 것은 인권운동의 몫이다.

2. 인권 개념의 확장, 상상력과 감수성의 중요성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인간존엄성과 관련한 국내외의 모든 형태의 규범적 권리를 모두 다 포괄하도록 하였다. 이를 제19조의 업무규정에 그대로 대입해서 적극적으로 확장하면 과거 IMF 구제금융사태 당시 정부의 정책대응에 대한 인권적 개입은 물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FTA도 모두 인권위가 개입할 수 있고, 또 당연히 해야 한다는 논리가 유추된다. 뿐만이 아니다. 무상급식 등 권리에 기반한 복지국가 디자인이나 해외파병, 원자력발전, SOFA, 이것의 모태인 한미상호방위조약까지도 인권위가 다룰 수 있는 사안들이다. 제19조로 포섭되는 인권의제는 실로 무한하다. 이의 발현은 제25조의 권고나 의견표명, 제28조의 의견제출, 제29조의 보고서 작성 등으로 가능하다. 이제껏 인권위의 업무는 이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인권위의 역량강화와 인권적 상상력의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3. 독립성의 위상과 수준

위원회법 제3조에는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18조에는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업무 이외의 조직, 인사,

예산상의 독립성은 담보하지 못했다. 그런데 업무가 어떻게 조직, 인사, 예산과 따로 존재할 수 있는가. 특히 그 가운데 예산과 조직은 업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명실공히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기관으로서 위상을 갖추려면 기존의 시행령, 직제령 등을 헌법기관 수준으로 맞춰서 그 독립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입법기술적으로 헌법기관이 아닌, 법령에 의한 기관은 규칙의 대외적 지속력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예컨대 국정원처럼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임용, 조직운영에 관한 특례를 만들면 되는 것이고, 이는 유엔의 국가인권기구설립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지적하는 바, 독립성을 확립하기 위해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원은 기존 정부구성원과 호환성(우리로 치면 공무원의 전입, 전출이 되겠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점과도 일치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기도 하다.

문제는 헌법기관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독립성을 향한 의지가 없는 것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기존 범문을 좀 더 세심히 보면, 현재의 법 규정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독립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게 아니다. 예컨대 법 제18조에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지 않고 굳이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 까닭은 무엇일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인권위 조직은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제멋대로 주무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상 행정안전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인권위 조직을 쥐락펴락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인권위가 스스로 조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하겠다는 의견을 내면 그때서야 비로소 형식적인 절차로 추진하는 정도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인권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안하는 것이다. 대통령령이라고 해서 덮어 놓고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인권위이기 때문이다.

4. 적용범위 논란, 북한인권

위원회법 제4조는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합법이든 불법이든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이주민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는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의하는 인권에는 헌법이나 법률, 국제인권법, 심지어 국제관습법까지 포괄하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이주민 인권 보호의 제도적 장치를 갖춘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일부 인권위원들의 인권의식이 법이 정한 수준에조차 이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아무리 제도가 확보된들 이를 운영하는 주체가 소극적이면 물거품이 되기 마련 아닌가. 예컨대 전원위원회에서 공공연하게 상대주의를 근거로 미등록 이주민 권리제한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는 인권위원의 당당한 언설을 듣노라면 여기가 인권위원회인지,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북한인권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가장 큰 쟁점을 형성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간할 줄 아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헌법학계에서는 우리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이 현실보다는 미래 통일조국의 당위를 규정한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지난 1991년 노태우 정부시절 대한민국의 주도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이뤄지면서 사실상 북한은 국제법상 독립주권국가로서 인정을 받은 셈이 되었다. 유엔 회원국 가입의 자격요건은 독립주권국가이면서, 평화애호국일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애호국이라는 것이야 당사국의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얼마든지 합리화될 수 있지만, 독립주권국이라는 지위는 국제사회가 인증해야만 비로소 획득될 수 있는 것이다. 국제법적인 질서 안에서 남북의 특수관계가 인정될 수는 있다. 그러나 선후가 바뀌어 세계가 다 인정하는 질서를 우리만 눈감고 막무가내로 부인한다고 해서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니

다. 우리 헌법이 1987년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1991년의 상황을 미리 예견하여 답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때문에 헌법 제3조를 축조적으로 해석해서, 또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북한지역도 한반도의 일부인 만큼 헌법상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주장은 적어도 비현실적이거나,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인권위는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고 천명하고 나섰다. 아마도 헌법 제3조와 인권위법 제4조를 기계적으로 조합하여 그 주요한 논거로 삼았을 것이다. 역시 분별력이 없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여겨진다. 어떤 인권위원은 북한정권에 의한 북한주민의 인권침해를 진정한 사건조사를 막무가내로 강압하다가, 위원회법 제30조 조사대상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제22조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로 정하고 있어, 조사대상으로 삼으려면 적어도 북한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로 간주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반론에 말문이 막히기도 한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북한을 사(私)단체라고 봐야한다면 차별사건으로 조사할 것을 강변하는 등 실로 코미디 같은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탈북주민의 국내 정착 생활에서의 차별문제, 국군포로나 납북주민송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면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합당한 대응이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의 북한인권 문제를 특정 정치 목적의 수단을 사용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기에 인권위가 앞장설 일이 아니다. 또한 그 역할도 형사소추를 목적으로 하는 한 법무부 역할의 일부일 뿐이다.

4. 구성과 운영, 위법한 대통령의 위원장 임명 절차

위원회법 제5조 3항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 대통령은 인권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임명한 바 없다. 지난번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파동 때와 마찬가지로 인권위원이 아닌 자는 원천적으로 대통령이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대통령의 임명권한은 법 규정을 무시한 채 행사되어 왔다. 한편 원칙적으로 합의제 기관의 특성상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할 게 아니라 인권위원들이 호선하여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업무량과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인권위원은 모두 상임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 인권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정도로 조정하되,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대법원장 추천 몫을 없애고 전원 국회가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때 후보추천위원회와 청문회 등 인사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5. 마무리

앞서 기술한 쟁점들 외에 인권위의 권고, 의견표명, 의견제출이 각각 어떤 의미가 있고,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실태조사, 방문조사, 진정사건조사, 직권조사 등 인권위법이 정한 각 조사의 방법을 고찰하여 권리구제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특별보고, 긴급구제조치, 합의조정제도, 면전진정 제도는 인권위가 인권과 관련한 주요의제들을 전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수립된 지 60년을 넘겼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민주주의가 첫걸음을 댄지 20년을 넘겼다. 사람의 나이 60세면 이순(耳順)이라고 하듯이, 정부는 원숙한 인격체로 거듭나야 한다. 소통과 공감으로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비전을 고민해야 한다. 협치의 롤모델로 국가인권위원회만큼 적극적인 기관은 없다.

시선

후원계좌는 농협 351-0294-9968-13 (강정마을회)

평화 강정

사진 한금선



쌍용 그리고 와락

추모사 권지영 가족대책위 대표
사진 정택용



다 늦은 저녁 쓰레기를 버리려고 집에서 입고 있던 대로
반바지를 입은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추웠어요. 밤바람이 너무 차다. 생각했습니다.
그 찬바람!
한밤중 새벽이 올 때까지 멍하니 켜진 컴퓨터 모니터를 보다...
자신의 휴대폰을 열어 거기에 적혀진
그동안 알고 지냈던 이들의 이름을 보다...
하나씩 하나씩 연락처를 삭제하고 찍었던 사진들을 지우고
통화했던 기억을 지웠다 했습니다.

몇 달 동안 집밖에 나가지도... 누굴 만나지도...
면도도 않고 이발도 않고 그 청년은 무얼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 마음은 정말 온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차가운 별판에 홀로 서서 그 바람을 다 맞고 있었겠구나...
그랬겠구나.....
이젠 돈도 없고...
다른 일을 할 자신도 없고...
동료들과 마지막까지 함께하지도 못했고...
회사는 다시 들어갈 기억도 없어 보이고...

될 하지
될 할까

수만 가지 상상과 이야기를 머릿속에서만 그렸다 지웠다를
반복하는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며 힘들어 했을까,
이 아까운 청년이.
한참 회사가 차를 많이 만들어 팔던 그때,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한다고 모두들 신나던 그때 입사를 했대요.
주, 야간 맞교대를 돌며 열심히 쇠판을 차에 갖다 붙이고
볼트를 조여 무쓰를 만들고 렉스턴을 만들었대요.
지금 계속 회사를 다녔으면
올해로 딱 10년차 노동자가 되었을 청년이예요.

세상에 딱 둘 뿐인 가족,
엄마랑 둘이 살던 고 김철강 조합원.
아들이 회사서 그리 되고... 일도 안하고...
그냥 저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며
속이 상해도 내 새끼 나아지겠지, 저러다 좋아지겠지,
무슨 일이야 있겠냐 그러셨대요.

고인이 세상과 작별해야지 하던 날,
오랜 관절염으로 병원에 다녀와 약 한봉지 먹고
또 일 가는 엄마한테 '엄마 아픈데 일 좀 쉬어' 했대요.
'이놈의 자식, 니가 일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니
엄마라두 일을 해야지' 그랬더니
그 착하고 순한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이더라요.

미안하고 안쓰러워 '엄마 괜찮아, 안 아파, 괜찮아 철강아'
고개를 숙이는 아들 모습이 맘에 짱해
그래서 김치도 볶아놓고 찌개도 끓여놓고
이것저것 반찬을 만들어 아들 밥 먹이려고 그렇게 해놓고
아들을 찾았는데...
그 아들이 그걸로 마지막이었어요.
이젠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먹을 수 없게 그걸로 마지막이었어요.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고 살 수 없는 것도 힘들고
길도 안 보이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공장 밖으로 밀려난 수천의 노동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생각을 반복하며 살고 있겠지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 같지는 않은데...
생각하면 울화통이 치밀고 억울해 죽겠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세상은 날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며 저만치 가 있는데...
나만 계속 그 자리서 길을 못 찾고 동동거리는 불안한 느낌.

더듬이가 잘려버린 곤충처럼 갈피를 못 잡는 그 어지러운 마음.
정리해고자, 징계해고자, 무급휴직자, 희망퇴직자,
각기 다 다른 이름으로 나뉘어져 누군갈 원망하고 싶고
그런 자신이 참으로 가치 없고 형편없다 학대하는 생활의 연속.

해고되고 파업하고 그렇게 제 자릴 찾을 수 없이
나를 망가뜨리며 살아가는 수천의 사람들.
아내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아이들이 가출을 반복하고
당장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버는 것도 힘에 겹고 버거운 사람들.

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게 몇 달이 된 거 같다.
담배조차 퇴근길에 사다줘야 핀다'는 아내의 걱정,
그런 걱정이 대단하게 큰 걱정거리도 되지 않은지 오래된
우리들 모습, 너나없이 다들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힘드니까...
한 때 쌍용차를 다니며 집에서, 이웃에서, 고향에서
번듯한 직장인으로 인사와고 인사 받던 건강하고 듩직한
그들은 이렇게 쉽게 닿지 못하는 섬이 됩니다.

검은 밤바다 속 비바람과 파도를 그냥 혼자 맞으며
조금씩 깎여져나가는 아무도 가지 못하는 버려진 섬.
이러다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아무 일도 아닌 일상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무섭고도 지독한 상상이 자꾸 되풀이돼요.
아니 이미 우리 곁에 조용히 와 앉아있는 것은 아닌가,
희망 없는 일상을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돌고 도는
바이러스 같은 죽음이 말이죠.



계속 이렇게 툭툭 꺾이는 청춘을 얼마나 더 봐야 하나
이렇게 속 아린 추모사 같은 걸 얼마나 더 쓰고 읽어야 하나
지난번에 말했어요.
이제 고인 앞에 두 번 다시 이런 죽음을 만들지 않는다 하는
다짐 같은 거 없겠다고
이젠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없어야하니까...

그랬는데 채 몇 달 되지도 않아 또 같은 소리를 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지.
제발 이 시간이 끝나려면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저 회사가 답해줘야 할 거 같은데...
회사가 어려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해결하고 싶으면 돈 갖고 와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계속 젊은 가장들이 청춘들이 죽는 걸
사는 것보다 쉽게 선택하는 나라가 아니게 하려면
회사가, 정부가 방법을 찾아줬으면...

정리해고가 시행되고 나서
여기저기 해고로 인한 다툼과 상처와 피해가 크다는 걸
지난 10년간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내 줘야죠.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회사가 커지고 돈을 벌었으니,
그런 노동자들의 노동이 이 땅을 이렇게 키웠으니...
그러라고 정부가 있는 거잖아요.
일하는 많은 사람이 살기 좋게 만들려고 정치도 있는 거라면서요.
우리는 지금껏 차고 넘치게 힘들었어요.

죽지 않고 기쁘게 일하면서 살 수 있게...
이 어리숙하게 순해빠진 이들이
행복하게 노동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세요.
깜깜한 바다 한 가운데 홀로 떠서
속으로 수천 번 눈물을 흘리고 닦기만을 반복하는
외로운 섬 같은 이들에게 등대를 보여주세요.
동료를 또 이렇게 보낸다는 한없는 죄스러움까지
이들에게 보태어지라고 마시고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는 것으로
또 다른 임무창이 강중완이 김철강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저 지금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저 그것이...

그렇게라도 여기 이렇게 서있는 우리가
고인께 좀 덜 미안할 수 있게...
한없이 미안하고 또 안타깝지만
쌍용차 실직자들이 자기 스스로 저를 기두는
힘든 결정을 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버티고 서있겠습니다.
앓던 얼굴의 무표정한 영정사진 속 젊은 청년이
그저 이젠 덜 괴로웠으면...
이젠 이것저것 힘겨웠던 삶의 짐들 다 내리고 그저 편안하세요.

잘 자요...
편안하게...



퀴즈로는 인권을 위

각 문항의 정답에 해당하는 글자를 찾아 아래 표에서 지워주세요. 거꾸로 인권에 실린 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문항 모두 지우고 남은 글자를 조합하면 정답입니다. 동일한 음절의 경우, 두 번 사용 될 수 있습니다. 정답을 12월 1일까지 인권위 공동행동 메일 (watch-nhr@hanmail.net)로 보내시면 12월 10일 이후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정답은 12월 10일 공개할 예정입니다.

진	정	4	교	차
인	독	공	고	별
한	화	업	직	11
중	성	능	성	금
자	지	학	립	공

- 2006년 8월 광주의 이곳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조사한 결과와 권고내용은 문제해결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두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더 밝혀냈고, 학교 교장, 교사, 직원 등 4인의 성폭력 범죄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이 곳은?
- 2011년 인권위는 인권위 노조 부지부장을 계약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부당 해고하였다. 이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한 00인을 부당 징계하였다. 이 중 △명을 □□했고, 7인을 감봉했다. 각 빈칸을 채우면?
- 2011년 9월 19일 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00000 00000 등의 인권보호 관련 의견표명' 안건이 부결되었다. 정리하고 철폐 투쟁의 상징이 되고 있는 싸움이며, 희망버스가 함께 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많은 이들의 분노와 탄탄을 자아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 2006년 인권위는 0000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하였고 법무부가 2007년 제출한 0000 법에는 성적 지향을 포함한 7개 사유가 삭제되었습니다. 최근 동성애자허용법이라든 보수 기독교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나는 꿈수다

글 한병철

꿈수하면 저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곳에서 자리잡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권위원장이 된 후 제가 먼저 한 일은 인권위법 상 자격 미달인 것을 알기에 인권위 직원들이 하는 말에 일단 충실히 따르기로 했지요. 인권단체들이 인권위원장을 검증하겠다고며 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직원들이 만든 답변으로 대체했지요. 사실 질문도 어려웠구요. 다음으로 한 일은 대통령이 저를 낙점해주신 만큼 그 뜻에 충실하려 했지요. 그래서 임진강 범람과 관련해서 긴급 논평을 인권위원장 명의로 냈지요. 그뿐만이 아니지요. 2009년 최대 인권침해 사건인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한 입장을 인권위가 내지 않도록 노력했지요. 그때 유행어도 만들었지요. 아시죠? '독재'라도 어쩔 수 없이 거시기하다는... 그 다음으로 한 일은 인권위가 아무 일도 안하는 것이었지요. 사실 인권위라는 게 원래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일을 하게 되면 정부에 쓴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09년과 2010년 전원위원회를 자주 열지 않았고, 상임위원 등이 안건을 제시하면 부결시키려고 꽤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일은 엉덩이에 힘 붙이기였습니다. 2010년 11월과 12월은 저에게 최대 위기였지요. 상임위원이 둘이나 사퇴하고 비상임위원도 사퇴하고 전문위원, 자문위원도 집단 사퇴하고, 게다가 전국적으로 인권단체들이 사퇴운동을 하니 두려웠습니다. 웬만하면 사무실에 출근 안 했고, 국정감사 때도 그런 요구는 일부의 주장인 양 무시했습니다. 역시 버티면 이긴다고 이제 인권위원장 사퇴 이야기는 잠잠해졌습니다. 올해부터는 국제행사를 많이 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꾸미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인권위는 일 안하는 게 좋은 거니까, 국제행사에 돈 다 써버리면 인권위가 다른 일 벌이기도 쉽지 않으니 1석2조이지요. 하여간 최근에는 마음 편하게 '인권' 말도 배워서 여기저기 강연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이 정도면 내년 7월 인권위원장 연임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소모뚜, 진짜 행복해?

글 사진 정선수

소모뚜는 열아홉에 버마를 떠나 올해로 16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다. 어느 이주노동자처럼 돈 벌러 한국에 왔다가 이제는 꽤나 유명한 이주활동가가 되었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장장 7년에 걸쳐 소송을 진행해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난민이 되고 뭐가 가장 기쁘냐?”고 물었더니 주저 없이 ‘정의가 승리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소모뚜는 언제나 신념을 가슴팍에 달고 뛰어다니는 달뜩 청년이다. 그런데 난 그런 긍정이 사실 불편했다. 인간이 어떻게 늘 신념으로만 살 수 있나? 외롭고, 힘들고, 배고프고, 원망스럽기도 해야 하는데 소모뚜는 늘 “다 괜찮아”다. 가끔씩 “소모뚜, 진짜 행복해?” 라고 물으면 그는 그저 웃기만 했다. 어제 저녁 나는 그 웃음의 힘이 아버지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

얼마 전 한국에 온 지 20년 된 소모뚜 친구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소모뚜는 그때 더 늦기 전에 아버지를 한국으로 초청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아들 손을 잡고 총성이 울리는 시위현장으로 달려가셨던 분, 열아홉 살 아들을 멀리 떠나보내며 “올바르지 못한 건 참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분, 그런 아버지를 한국으로 모셨다.

아버지에게 “돈 벌러 간 아들이 버마민주화운동과 이주노동자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걱정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나와 남을 가리지 않고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버마 불교의 가르침 그대로 아들이 행복하게 지낼 거라 믿었다.”고 말했다. 그러기에 아들이 지난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는 인권상을 거부했다는 뉴스에도 놀라지 않았다. 아버지는 요즘 아들이 강의하는 학교와 노래하는 공연장을 돌아보며 자신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기쁘게 확인하고 있다.

아버지는 한국에 오자마자 아들에게 어머니가 준비한 반지를 건넸다고 한다. 소모뚜가 아기였을 때 형편이 어려워 어머니는 소모뚜 손에 끼워진 반지를 팔아야 했다. 그때 소모뚜는 어머니에게 “그거 안 가져가면 안 되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그 말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 이제야 반지를 마련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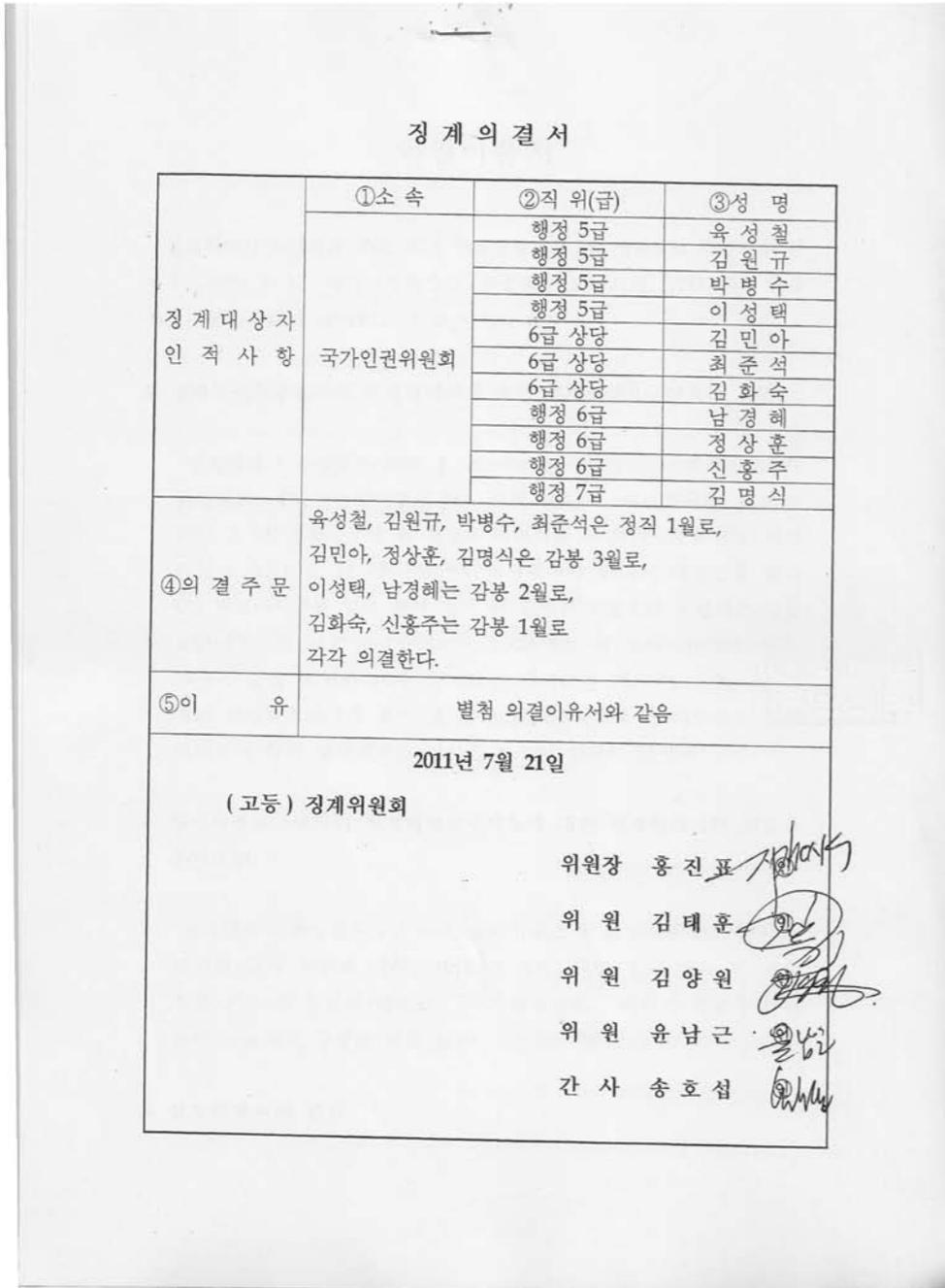
소모뚜는 한국에서 제일 신기했던 것이 시위하던 사람들이 죽지 않고 다음날 멀쩡히 회사에 출근하고 학교 가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철차적 민주주의가 그런대로 자리를 잡은 한국 땅에서, 여전히 총구의 위협에 시달리는 버마의 현실을 떠올렸다. 그런 이유로 그는 한국이 걸어온 민주화의 여정이 버마 땅에서 재연되는 꿈을 품고 살아간다.

영문도 모른 채 반지를 빼앗겼던 아기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살육의 현장을 지켜본 소년이었다. 그 소년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에 대한 분노를 노래와 행동으로 보여주는 청년이 되었다. 나는 지금 그 청년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징계 그리고 희망

- 1. 28. 강인영 조사관에 대한 위원회 계약연장 불가 결정
- 2011. 2. 직원들, 위원회 결정 재고 및 설명 요청
- 2. 14. - 25. 직원들, 1인 피켓시위 및 외부 언론 기고
- 2. 28. 직원들, 1층 로비 및 청사 앞에 피켓 전시
- 4. 8- 4. 26. 1인 피켓시위 및 외부언론 기고자에 대한 조사
- 7. 6. 위원회, 징계위원회에 중징계(3명), 경징계(8명) 요구
- 7. 20. 위원회 징계추진에 대한 직원 제1차 탄원서 제출
- 7. 21. 징계위원회, 정직(4명), 감봉(7명) 의결
- 8. 10. 징계자, 징계의결 결정에 반발하여 재심 청구
- 8. 9. 직원들, 징계자와 함께 하는 비빔밥 나누기 행사
- 8. 29. 징계자, 재심 징계위원회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
- 8. 30. 직원들, 재심징계위원 구성과 징계추진에 대한 제2차 탄원서 제출
- 8. 31. 징계위원회, 기피신청 기각 결정, 징계대상자, 재심청구 취하
- 9. 2. 위원회, 1인 피켓시위 및 외부언론 기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 2011. 9. 직원들, 징계자 명절휴가비 및 재판비용 지원을 위한 모금
- 9.30 징계자 중 일반직 8명,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 취소 청구
- 10. 4. 정직자 출근 재개, 점심 나누기 행사
- 2011. 11 징계자 중 별정직 3명, 국가인권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자기 부정과 위선이 빚은 지독한 난센스



글 편집부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지난 9월 2일, 1인 시위 등을 하였다 는 이유로 11명의 직원에 대하여 1개월 정직처분 등의 징 계처분을 내렸다. 사유는 1인 시위, 릴레이 기고, 피켓 공 동전시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가 규정하고 있는 품 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같은 법 제66조가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신분보장 정도가 강한 경력직과 신분보장 수 준이 약한 특수경력직으로 구분된다. 경력직에는 보통 일반직, 기능직 등이 있고 특수경력직에는 별정직, 계약 직 등이 있다. 인권위에는 비록 소수이지만 계약직 직원 이 있다.

인권위는 UN이 1991년 프랑스 파리회의에서 천명한 국가 인권기구 구성 원칙에 따라,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조건이 까다로운 일반직뿐 아니라 시민사회 활 동 등 다양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별정직과 계약직으로 채 용해 왔다.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인권위가 상대적으로 높 은 비율의 별정직과 계약직 직원을 채용한 것은 국가인권 기구의 인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이 러한 이유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직 직원들을 계속 고용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

그런데 인권위는 올 초 사전예고나 사유 설명 없이 계약 직 직원인 강모 씨에 대해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여 직원들을 경악케 했다. 특히 강모 씨는 노조 부지부장으로 평소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비판 적 태도를 보여 현 위원장이 싫어한다는 소문이 있던 터 라 인권위의 계약갱신 거부결정은 그 공정성을 의심받기 충분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의 직원들이 인 권위 지도부에 대해 계약갱신 거부결정의 이유와 불가피 성을 설명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으나 철저히 묵살 당했다. 참다못한 인권위 직원들이 14일 동안 매일 점심시간에 한 사람씩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고 <오마이뉴스>에 피켓을 들게 된 사연을 기고하게 되었다.

위원장은 11명이 외관상 1인 피켓 시위를 하였으나 하루도 끊이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외부기도 또한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 점에 비추어볼 때 참여자들이 사전공포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공포만으로도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 다. 또한 피켓문구나 기고문의 내용이 위원장과 위원회를 비방하여 국민들의 위원회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기 때문 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원장은 징계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가 금지하는 집 단행위를 지목했으나 직원들의 행위는 법률적 의미의 집

단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이는 설사 연속된 1인 시위와 외 부기고가 공포에 의한 것이라 해도, 어제 갑이 1인 시위 를 하고 오늘 을이 하고 내일 병이 하였다고 하여 갑, 을, 병 모두를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이치와 같다. 즉,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함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것이 아니므로 집단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 다. 백보를 양보하여 통념상 '집단행위'라 하더라도 국가 공무원법 제66조가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 기는 더더욱 어렵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표현의 자 유가 국민의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제도로써 기능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해석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 규정은 공무원의 모든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명백히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다. 10여년 가까이 근무해온 직원을 아무런 설명 없이 자른 행위가 부 당하다고 항의한 것은 공익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익을 위한 것이며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진행한 것이기 에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여지도 없다.

또한 이러한 위원장의 부당한 처사를 비판한 행위는 공무 원의 품위를 떨어뜨린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품위를 유지 하기 위한 몸부림이라 할 것이다. 인권위에서 10여년 가까 이 일해 온 직원을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해 고한 상황에서 주위 동료들이 침묵한다면 무슨 면목으로 타 기관에 대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단 말 인가? 그것이야말로 자기부정이고 위선이다. 따라서 직원 들의 비판행위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몰아세우는 것 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자 국민의 표현의 자유 보호를 강조해 온 인권위의 자기부정이라 할 것이다.

비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힘으로 입을 틀어막거나 감정 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논리를 갖춘 반박 이다. 이번 징계과정에서 보여준 위원장의 모습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비판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징계권이라는 권력을 이용한 입 틀어막기에 다름 아니다. 만일 위원장이 직원들의 비판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오마이뉴 스>에 반론을 실어 논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었음 에도, 그러한 노력 없이 징계처분권을 남용하여 직원들의 목소리를 적어 눌렀다. 그런 위원장이 인권위 10주년에 즈 음하여 국민의 인권보호 운운하는 것은 지독한 난센스라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은 징계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리 편집부

육성철(정직 1월)

마흔이 넘어 소신에 따라 판단한 행동인 만큼 저의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것입니다. 다만 오늘의 판단이 인권위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해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인권위가 늘 강조해 온 다양성 존중의 원칙을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성에 기반한 폭넓은 소통이 위촉된다면 인권위의 미래는 암담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인권위원님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인권위를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떠나도 인권위 직원들은 인권지기 노릇을 해야 합니다. 인권위가 제 기능을 충실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타의 기관보다 인권적 원칙에 더욱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라 할 표현의 자유는 인권위가 가장 모범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징계절차를 밟게 된 것은 인권위 역사에 그늘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상처를 올바르게 짊어와만 인권위가 인권 위대한 미래를 열어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징계를 계기로 인권위가 위아래 구분 없이 쓴 소리를 품을 줄 아는 보다 '열린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그간의 과정에서 저의 표현과 행동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병수(정직 1월)

동료가 위원회의 재계약연장 불가 결정으로 갑자기 위원회를 떠났습니다. 그 동료는 위원회 구성원 누구나 인정하는 전문성과 인권보호 열정이 매우 높은 직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 많은 위원회 구성원들이 그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그리고 이후에는 결정을 한 이유라도 설명해 달라고 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위원회로부터 아무런 설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 차원으로 면담을 신청했지만, 그것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인 피켓시위와 외부기고를 통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지도부가 직원들의 요청을 조금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저의 피켓시위와 외부기고 행위는 이해하기 어려운 위원회 결정으로 위원회를 떠나야 하는 동료직원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이며, 위원회가 민주적 조직운영과 내부소통을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행위가 특정인과 위원회를 비난하고자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본의와 달리 제 글의 표현으로 마음이 상한 분이 계신다면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인권보호 전담기구인 위원회에서 내부 구성원의 공적인 문제제기에 대하여 인권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인권에 기초하여 판단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김원규(정직 1월)

여기 계신 징계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번 징계 건은 단순히 징계대상자들을 징계하느냐, 마느냐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징계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징계결정을 내리시게 된다면 징계사유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은 징계의결요구서 상 징계사유와 같이 모호하고 불명확하게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마시고 제가 한 행위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명확히 적시하여 무엇 때문에 징계를 받는지를 제가 알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재판의 판결문은 이후 강제집행을 하는데 필요한 집행권원으로서의 성격도 있지만 재판당사자를 설득하는 기능도 있고 재판에서 다루었던 쟁점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본 징계결정문도 징계사유를 명확히 적시하여 제가 납득할 수 있게 하여주시고 향후 인권위가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침해가 문제되는 진정사건을 처리할 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석(정직 1월)

국가인권위원회를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하며,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0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으로 근무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2002. 4. 1. 인권위에 발을 디디면서부터 몇 년간은 인권위에서 일하는 것이 자랑스러웠고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를 했으며, 설혹 얼토당토한 문제의식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때로 격하게 언쟁을 벌이기도 하며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이야기하고 다른 이의 생각의 조금씩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중략)

저는 지금껏 한 번도 전원위원회나 소위원회의 결정내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결정내용이 저의 생각과 다르고, 제가 생각하는 정의와 인권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건 위원회의 결정이기에 존중했고, 위원들을 설득할 정도의 내공을 쌓지 못한 저를 탓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구성원을 대우하는 문제는 다릅니다. 이것은 사무처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무처는 위원회의 모든 직원의 인사 문제를 쥐고 있으며, 그로 인해 모든 직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사무처에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이 횡행한다면 그런 조직에 자신을 맡겨 신명을 다해 일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위원회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위원회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김민아(감봉 3월)

1인 시위와 언론 기고, 자유게시판 실명 게시는 우리 모두가 민주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임을 일깨워주는 소통 방식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귀한 열매임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인권위 존재 의의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인권위 업무는 그 성격상 타 국가기관과 긴장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지만 건강한 긴장 관계는 갈등이 아니라 상생을 돕습니다. 인권 위로부터 시정 조치를 권고 받는 기관은 처음에는 불쾌함을 표하고 저항하지만 권고를 수용하고 인권친화적인 문화가 시스템으로 정착하고 나면 인권위 존재 의의를 존중하고 높게 평가합니다. 하나의 예로, 경찰 및 군대 내의 구타 등 폭력 문화는 상당부분 인권 위 시정권고를 통해 개선되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인권 존중의 문화는 구성원 모두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에는 상하가 없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지도부가 존경받을만한 귀감을 보여주시면 구성원들은 기쁜 마음으로 동참될 것입니다. 믿고 따를만한 지도력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김명식(감봉 3월)

저는 강인영 조사관의 재계약 건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보여준, 인권위원회라는 이름에는 걸맞지 않는 행정처리, 직원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한 리더십이 위원회의 민주적인 소통문화를 무너트렸다고 생각하며,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징계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번 징계위원회가 단순히 공무원 법의 조항을 바로 보는 시각이 아니라, 국가인권기구가 표현의 자유를 바라보는 시각,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민주적 조직문화를 일구어왔던 대한민국 인권위원회의 역사에 비추어, 심의하시고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스스로 권고하고, 옹호해왔던 모습과 다른 결정으로 인권위의 위상을 추락 시키는, 그로 인해 자긍심으로 뭉쳐있던 직원들의 마음이 다시 생채기를 내는, 우리가 조사하고 권고해야 하는 기관들이 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는, 인권사회가 위원회를 협력의 상대가 아닌 감시와 비난을 받는 상대가 되는, 이러한 두려움이 위원회를 채우지 않도록 부디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상훈(감봉 3월)

내년이면 공무원 생활한 지 20년이 됩니다. 평범하지만 나름 열정을 갖고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해왔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공무원인 제가 왜 1인 시위 등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2011. 1. 28. 재계약심사위원회의 결정이 공정하지 못한 부당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했고 위원회가 소통에 대해서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 당시 위원회 사무처가 많은 구성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적어도 설명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면 1인 피켓 시위 등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중략) 그동안 위원회는 저를 비롯한 징계혐의자들에게 ‘법위반 사실 인정’, ‘사과’, ‘재발방지 약속’을 하면 경고 또는 주의 조치로 마무리 할 수 있다고 여러 번 밝혔습니다. 이런 점에서 위원회는 징계 혐의자들의 행위가 공무원법 위반을 했다고 하더라도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면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어쩌면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징계를 요구할 정도의 심각한 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그 대상자가 무엇을 하더라도 법대로 처리해야 했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징계혐의자들이 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못하자 징계혐의자 중 3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성택(감봉 2월)

3월 2일 제가 마지막으로 피켓을 들었습니다. 살을 에는 추위 속에 손가락이 굳고 얼굴 살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이제 그 어느 여름보다 더한 폭염 속에 징계가 결정됩니다. 감사관실 조사는 제가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이미 한 달 이상이 지난 4월 8일이었습니다. 조사가 다 끝나고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달이 지났습니다. 직원 연찬회도 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반전은 6월 초부터 진행된 소위 ‘대화’였습니다. 솔직히, 징계권자와 징계 혐의자들이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이제 유달리 긴 장마도 끝나고 휴가철입니다. 2월의 시위, 4월의 조사, 6월의 대화, 그리고 7월 말 징계를 맞이합니다. 공무원 징계 역사에 이처럼 우유부단한 징계는 찾기 힘들 것입니다. 유례없는 ‘대화’와 장기간의 휴지기를 보던데, 징계권자조차 이 징계의 정당성에 스스로 의문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저 하나 징계 받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이번 일로 실제 피해를 입는 분들은 저 하나에 그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된다는 점이 저를 슬프게 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사무총장님 이하 사무처 직원 전체, 그리고 위원회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이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징계 이후가 그래서 괴롭고 두렵습니다.

남경혜(감봉 2월)

저는 <오마이뉴스> 기고문에서 강인영 조사관의 재계약 거부의 부당함, 그리고 인권위원회가 외부에서 많은 비판과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위원회는 많은 민간단체와 협력하였고 때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언제나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인권위가 가진 사명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에 맞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내용을 표현한 것입니다.

“독재시대에서 가능한 행태”, “거짓말투성이 해명자료”, “추잡스러운 공간” 등은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나 전체적인 맥락과 글의 취지를 볼 때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이 일한 동료에 대한 재계약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1인 시위를 하였고 그러한 내용을 언론사에 글을 기고하고 내부게시판을 통해 동료들에게 본인의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위원회 지도부가 좀 더 직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상생적인 대화를 통해 풀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김화숙(감봉 1월)

나이가 들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들 말한다. 내 일련의 행위와 선택이 우리 조직 구성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안긴 부분이 있다면 나는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아니, 상처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점, 인정한다. 어쩌면 이것이 내가 사람으로서 치러야 할 가장 큰 몫인지도 모르겠다. 정당성 여부를 떠나 내 일련의 행위와 선택에 대해, 사람으로서 그리고 조직 구성원으로서 책임져야 할 몫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겸허히 받을 것이다. 다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의 몫이 있다면, 그 나머지의 몫은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

2018년 동계올림픽이 평창으로 결정되던 순간, 텔레비전에서는 민간 서포터스에 관한 짧은 다큐가 방영되었다. 다소 신파적일 수 있었는데도, 난 작은 감동을 받았다. 10여년을 한결같이 무언가를 염원해온 그 세월과, 세월이 가꿔온 열망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이 지나면 또 지금이 되는, 그 순간들을 무엇으로 견뎌냈을까. 10여년을 인권위에서 자라난 내 열망이, 인권위가 내가 사랑하는 조직이기를 바라는 염원이 다다른 길에도 ‘이야기’가 남을 것이고,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을 담담하게 직면하고 싶다. 어느 소설가의 말처럼 한 번 울면 백팔십 번은 웃는 게 인간이라는 종이라 하니 말이다. 내가 믿는 것은 내가 한 번 울 때마다 함께 울어줄 동료가 있고, 백팔십 번 웃을 땐 이를 몇 배로 돌려줄 따뜻한 시선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나는 으샤으샤 하고 싶다.

신홍주(감봉 1월)

“사과와 용서” 이 두 단어의 의미가 압축적으로 보여주듯이 감사 이후 위원회 지도부는 “사과를 하면 선처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제 행동이 옳았으므로 사과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의 본질인 위원회의 인사와 소통부재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나 의사표명 없이 일방적으로 사과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과에 대해 무엇이 옳았는지는 자신의 위치와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절대적으로 옳았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가 빌라도 앞에 끌려 왔을 때 빌라도가 예수에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빌라도의 물음에 대해 요한복음서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진리, 혹은 옳은 것, 가치 등은 보는 관점과 위치, 시대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겸허하게 신께 감사를 하는 것은 1인 시위와 감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나 신념을 위해, 혹은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 되는 것에 대해 분노할 줄 아는 정의감, 이런 것들이 아직 희미하게나마 내게 살아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 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인권위 공무원들의 아름다운 합창

글 사진 인권위 직원



정직을 마치고 복귀한 징계자들이 음식을 준비해 직원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믿기 어려운 거대한 움직임이었다. 인권위 출범 10주년이 결코 허망한 세월이 아니었다. 그들은 '각자'가 아닌 '서로'가 되었다. 그들은 위원회를 떠나는 동료의 마음을 보듬어 주었다. 그들은 인권위를 지키려 했다. 역할을 다하고 인권위를 떠났던 분들은 비루한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타의로 인권위를 떠나야 했던 분들도 직원들에게 힘을 보탤다. 시민사회와 인권단체도 함께 했다. 고단한 시기에 울려 퍼진 '아름다운 합창'이었다.

“죽어버려도 좋을 만큼 행복했다.”

인권위 안팎에서 인권위 대표 조사관으로 인정했던 강인영 조사관은 마지막으로 출근하던 날, “인권위 구성원으로서의 자존심과 자부심에 행복한 나날을

보냈으며,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도 좋을 만큼 행복했던 시간을 보냈다”며 인권지기로서의 삶을 회상했다. 그날 강 조사관은 직원들에게 “더 이상 함께 견디지 못해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 다시 만나는 날, 그동안 고생했다고, 잘 견뎌줘서 고맙다고, 기억하라 수고했다고, 제가 받은 사랑과 격려 고스란히 돌려 드릴게요. 아니 그 보다 훨씬 더 많이...”라고 작별 인사를 했다.

직원들은 동료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었기에 재고와 설명을 요청했다. 그리고 서로 소통하면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보자고 마음을 모았다. 어느 직원은 “사람이 건강하려면 피가 맑아야 한다. 피가 탁하고 혈관이 막히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원활한 소통이 조직을 건강하게 만드는 원천

이니까 제발 소통하자”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직원들은 대화가 단절된 현실에 참담함을 느꼈다.

이에 일군의 직원들이 1인 피켓시위를 벌이고, 자신의 생각을 언론에 기고했다. 위원회가 이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어느 직원은 “그동안 돌부처라도 돌아서 볼 직원들의 목소리가 연일 계속됐는데도 미동도 없다가 결국 한다는 것이 책임을 묻는 것인가요?”라며 허탈해 했다. 또 다른 직원은 “(조사 받으러) 가지 말라. 저항해라. 그리고 우리에게 오라.”며 울분을 토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엔 “그들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라는 게시판의 격문이 직원들의 가슴을 저미게 했다.

위원회는 다수 직원들의 반대에도 피켓 시위자들에게 대항 징계결정을 요구했다. 그러자 어느 직원은 “어떻게 만든 위원회인데, 어떻게 꾸러운 위원회인데, 하루 아침에 위원회의 위상은 물론이고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직장으로 전락시킬 수가 있는 거죠?”라며 안타까워했다. 어느 과 직원 일동은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일벌백계가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부족을 채워주는 협심이다”라고 당부했다. 또 다른 과의 구성원들도 “인권기구의 생명은 도덕적 권위입니다. 도덕적 권위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정신과 가치를 몸소 실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존경과 신뢰에 기반한 힘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혔다.

징계위원회가 피켓 시위자들에게 대해 정직과 감봉을 의결하자 직원들은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모 직원은 “내 사랑하는 동료들이 정말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숨이 막힌다.”고 암담함을 털어놓았다. 또 어느 직원은 “공무원 조직의 문제점을 외부에 알리는 것은 현재 조직을 대표하는 공직자들의 품위와 대국민 신뢰를 손상하는 것이므로 국민들에게는 절대로 비밀로 해야 한다.”며 징계결과의 의미를 매섭게 풍자했다. 이 무렵 인권위 직원들은 일명 ‘비빔밥 데이’를 열어 각자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며 동료에 대한 애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즐겁게 비볐다.

징계를 받은 직원들은 위원회 내부에서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재심을 청구했다. 그런데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재심위원을 원심위원 그대로 재구성했다. 그러자 어느 직원은 “재심신청이란 이전 의결이 불합리하여 동의할 수 없고 심사를 다시 받아 이전과 다른 결정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재심의 의미는 없다.”고 일갈했다. “다른 곳도 아닌 인권위에서 매일 귀를 의심하고 눈을 의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며 한탄한 직원이 있는가 하면, “하늘을 가리고자 드넓은 하늘을 향해 뻗어 올린 자의 손바닥 크기만큼의 하늘은 가려지겠군! 그 손바닥 크기만큼의 하늘을 뻗 나머지의 하늘은 무엇으로 가리려나.”며 허탈해 한 직원도 있었다. 직원들의 거센 항의에도 위원회는 재심 징계위원을 재구성하지 않았고, 징계대상자들은 재심청구서를 취하하기에 이르렀다.

직원들도 놀란 모금, 1,190만원

징계가 집행되자 직원들의 위로와 격려가 이어졌다. 직원들은 명절 직전 징계 처분이 내려져 징계자들이 휴가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자발적 모금을 진행해 1,190만원을 모았다. 진한 동료애에 감동한 징계자들은 “감사합니다.”를 연발했고, 소중한 마음에 감동했다. 어느 징계자는 “이번에 진 빚을 때가 되면 다 갚아 드리겠다.”고 했고, 또 다른 징계자는 “민폐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했다.

징계자들은 직원들의 응원과 지지 덕분에 억울함을 누르고 다시금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특히 정직자 네 명은 한 달 만에 출근한 첫날 각자 김밥, 주먹밥, 떡, 잡채, 녹두부침, 샐러드, 홍어회 등을 준비해 동료들의 성원에 답했다.

그들은 예전에도 하나였고, 지금도 하나이며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다. 인권위 내부에서 ‘아름다운 합창’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일 듯하다.

정직한 동행, 그들이 궁금하다

10월의 어느 저녁 인권위 근처 호프집. 한 달간의 '정직'한 기간을 마치고 돌아온 4명이 모였다. 그들이 한 달 동안 무엇을 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들어보았다. 편의상 김원규(김), 박병수(박), 육성철(육), 최준석(최), 사회자(사)로 표기한다.(편집자 주)

사: 먼저 정직한(!) 기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육: 저는 인권 현장을 보고 싶었어요. 강정마을부터 쌍용자동차까지 돌아다니며 팽팽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박: 저는 징계 받고 그냥 집에서 주옥 쉬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가만히 놔두지를 않더라고요.

사: 아니 도대체 누가요?

박: 함께 징계 받은 분들이 전화해서 '지리산 같이 가자', '누굴 함께 만나자', '어딜 찾아가자'고 해서 초반을 그렇게 보내다보니 시간이 2주 정도 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결국 2주 동안 가족들하고 보내면서 점수 좀 땀죠!

사: 구체적으로 가족들에게 어떻게 점수를 따셨는지요?

박: 애들 등교시키고 하교할 때 마중 나가고. 그러니까 나중엔 애들이 '아빠 계속 집에 있으면 안 돼?'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정도면 성공 아닌가요? 하하하.

육: 그런데 우리가 박 조사관 집에 놀러갔을 때 부인께서 '더 이상 집에서 쉬는 정직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던가요?(모두 웃음)

최: 전 정말 갑작스럽게 징계가 결정되는 바람에 정신이 없었어요. 애초 계획은 그냥 자유롭게 여행가는 것이었는데 저도 여기저기 돌아 다



니느라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주도 가서 강정마을도 보면서 조금은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죠.

육: 최준석 조사관은 제주도 오름을 다니다가 강정마을에 왔고 저는 올레를 걷다가 강정마을로 들어가서 함께 촛불문화제에 참석하기도 했지요.

사: 김원규 조사관님은 남다른 시간을 가지셨다고 들었는데요?

김: 여유를 갖고 인권에 관한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는 계획을 세웠었어요. 하지만 한 자도 못 쓰고 정직이 끝났어요.

박: 현재 진행 중이시니까 언젠간 꼭 쓰시겠죠.

김: 사실 그 계획을 실행하지 못한 주요 원인은 이 분들 때문이었어요. 툭 하면 만나자, 어디 가자...

최: 아니! 지리산 가자고 맨 처음 말한 건 김 조사관님이잖아요?

김: 그랬나? 뭐 아무튼. 저는 아내의 '명령'을 받고

하루 40분씩 11타임을 앉아서 '묵언수행'하는 명상을 4일 동안 했어요.

사: 정직자 네 분이 같이 지리산을 다녀오셨는데 뭐 재미난 에피소드는 없었나요?(이때 잠시 '사실상' 해고자 강인영(강)이 게스트로 등장했다.)

강: 지리산 여행의 최대 키워드는 단연 막걸리예요! 광주에서 김원규 조사관을 만났는데 배낭이 아주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속을 봤더니 가방에 막걸리가 가득 든 거예요. 광주에서 광주 막걸리 사고, 남원에서 남원 막걸리 사고, 지리산에서 지리산 막걸리 사고...(모두 웃음)

김: 막걸리가 동네마다 맛이 달라요. 아마 6~7 종류의 막걸리를 15통 이상 사서 마신 것 같아요.

박: 그걸 다 들고 다니면서 쉴 때마다 앉아서 계속 마시고, 완전 음주산행을 했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마셨던 막걸리보다 2박 3일 동안 지리산에서 마신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육: 저는 지리산 실상사에서 보낸 시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박: 실상사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자고 했더니 최준석 조사관이 '저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해주세요.'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아침 공양 맨 '평소에도 아침을 안 먹는데 여기까지 와서 무슨 아침이예요?'라면서 또 안 나와요. 도법스님을 뵈고 차 한 잔 하려고 했는데 이번엔 '저 배탈 나서 못 가요.'라고 말해 달라는 거예요.(모두 웃음)

김: 도법스님이 따라주시는 차를 마시던 극락전 요사채는 창문 밖 풍경이 정말 좋았어요.

육: 저희들이 지리산에 머무는 동안 많은 동료들이 찾아왔어요. 지리산을 떠나던 날엔 전직 인권위원 분과 함께 남원으로 가서 김주열 열사 묘역을 참배했지요.

사: 제가 아직 지리산에 가본 적이 없는데 이야기를 듣다보니 꼭 한번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 에이~ 지리산 가려면 일단 징계부터 받아야지.

징계 받는 방법은 최준석 조사관이 잘 알고 있으니 한 수 배워주세요. 어떻게 하면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올라갈 수 있는지 놀라운 업그레이드 노하우를 꼭 챙기세요.(모두 웃음)



사: 정직기간 동안 얻은 것과 잃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육: 동료 직원들의 탄원서와 명절휴가비 모금 소식을 듣고 '나중에 함께 할 동료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 복귀하니까 일이 몰려서 쫓기는 심정이 된 게 잃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 앞으로 혹시 또 중징계를 받을 정도로 분노할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 전 참을 것 같아요... 하하하.

박: 에이~ 최준석 조사관은 참아도 소용없어~ 그냥 존재만으로도 징계야.

최: 아, 그런가요? (모두 웃음)

박: '이건 아니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잘못 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든다면 또다시 표현해야지요.

김: 저는 눈앞에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현실의 '너머'를 봐야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인권위는 법에 보장된 권한조차 제대로 못쓰고 있어요. 이제 우리 직원들이 함께 바꾸면서 희망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글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준) 국가인권위원회 지부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천인공노> 제3호에 실린 글을 재구성한 것임.

도가니 사건, 인권위가 했어야 할 일

글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조교수)

영화 도가니가 연일 화제다. 누적 관객 수 460만 명을 넘었고, 영화를 본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정부와 정치권도 대중들의 분노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경찰은 사실상 채수사에 착수했고,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방안'을 발표했고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특수학교 실태조사에 나섰고, 경찰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다. 광주교육청은 특별감사를 실시해, 관련 교사 6명을 중징계하도록 법인에 요구했고, 관련 이사 1명의 해임을 광산구청에 요청했다. 광주시는 광주인화특수학교(이하 인화학교)와 광주 인화원(이하 인화원)을 운영하는 우석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태세다. 인권위는 인화학교에 대한 직권·방문조사를 실시했다. 국회에서는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불리는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도 임박했다. 이 핑계저 핑계를 대며 사건 해결에 미온적이던 관계기관이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는 풍경이 씩씩하다. 그들은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그동안 '아주 의도적으로' 안했던 것이다. 그래도 아직 많은 일이 남아 있다. 이를 위한 열쇠말은 장애인의 '인권'이다. 한마디로 장애인도 인간으

로서 평등하게 대우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권단체에서는 장애인시설문제의 근본적 개선과 더불어,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사회에서 자립하여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도가니 사건이 '인권'문제라면, 인권위도 무엇인가 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권위는 한편으로 도가니 사건에서 인권위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지만, 다른 한

편 인권위는 스스로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도가니 사건은 피해자가 지역 인권단체에 이 문제를 상담하고, MBC <PD수첩>에 관련 사건이 보도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관련자가 처벌받기도 했지만 문제해결의 핵심에는 접근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인권위가 2006년 8월 내놓은 조사결과와 권고내용은 문제해결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것은 우

리 사회에서 인권위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확인시켜준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인권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어떤 국가기관도 규명하지 못했던 사건의 실체를 밝혀냈다. 인권위는 이미 처벌을 받은 두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더 밝혀냈고,

인화학교 교장, 직원, 교사, 인화원 생활재활교사 등 4인의 성폭력범죄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경찰, 검찰 등 강제수사권이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들이 못한 일을 인권위가 해낸 것이다. 아마 당시 인권위 조사가 없었다면 도가니 문제의 해결은 몇 년 더 지체되었을지도 모른다.

당시 인권위 권고 또한 의미 있는 것이었다. 인권위는 이 문제가 가해자 몇 명 처벌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인화학교와 인화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책임에 주목했다. 인권위는 '우석'이 인화학교와 인화원에서 성폭력 사건이 수차례 적발되었음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법인 임원진을 해임하고 새롭게 이사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피해학생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광주시 교육감에게 피해학생들에 대한 전문적 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성폭력 전문상담 시스템을 갖추도록 권고했다. 더 나아가, 인권위는 청각장애학생의 교육권 문제에도 주목했다. 청각장애특수학교에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가 3.8%에 불과하다는 사실 등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래서 인권위는 청각 장애인교육권의 보장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수화통역사 자격증 보유 교사 확충, 표준수화의 어휘 확장, 실효성 있는 교육자료 마련 등의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사법기관의 법적 구제는 오로지 가해자의 처벌에 초점을 맞춘다. 구조적인 원인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필요도 없다. 하지만 인권위는 달랐다. 추가적으로 가해자들의 범죄사실을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 사건의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했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들을 꼼꼼하게 권고했다. 아마 그때 그 인권위 권고가 다 받아들여졌다면 도가니 사건은 조기에 마무리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기까지였다. 인권위는 자신의 권고내용을

끝까지 관철시키지 못했다. 조사내용과 권고사항을 보도자료로 '발표'한 것이 전부였다. 도가니 문제를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인권위가 아니라 인권단체들의 끈질긴 싸움 그리고 영화 '도가니'의 개봉 덕분이었다.

인권위는 사실 항상 그랬었다. 인권위는 그동안 중요한 인권현안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의미 있는 권고를 꾸준히 내놓았었다.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사형제 폐지 권고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인권위가 이 권고를 관철시키려고 노력했던 적은 거의 없다. 도가니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 정도로 충격적인 문제를 이슈화시키지 못한 것은 분명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인권위는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했고, 인권위원장은 시장, 교육감, 교육부 장관 면담이라도 해서 어떻게든 권고를 관철시켰어야 했다. 인권위는 사무실에 앉아서 고상하게 권고문이나 작성하는 기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인권옹호기관이기 때문이다.

최소의 기능만 발휘하는 인권위

인권위의 역할은 법에 주어진 권한을 있는 그대로 수동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인권옹호자의 자세로 인권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모색할 때 존재 의의가 있다. 인권위원 임명과 인권위 직원 채용이 중요한 것은 그래서다.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신념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일할 때만, 인권위는 겨우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법률적 자격요건에도 미달하는 사람들이 인권위원으로 버젓이 임명되어 있고, 인권위는 알리바이성 업무만 겨우 처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적인 인권위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인권위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기에, 우리는 '인권위 제자리 찾기'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



85는 김진숙의 크레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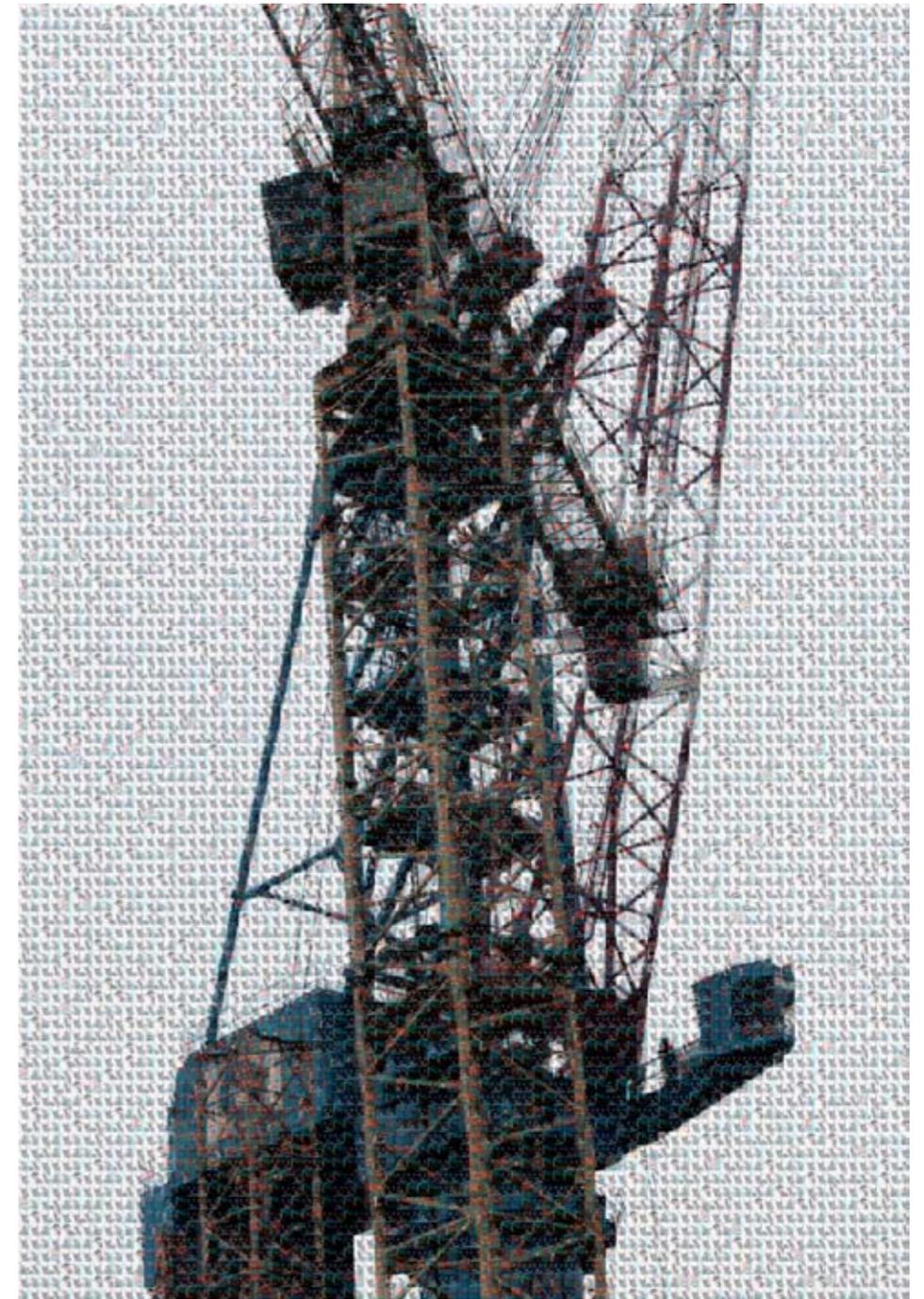


85번의 죽음, 85명의 열사, 85개의 영정

강경대 강상철 고정자 권미경 김경숙 김기설 김동윤 김병구 김상진 김성애 김성운 김수배 김순조 김영균 김용갑 김윤기 김의기 김종수 김중하 김진수 김철수 김태환 김학수 남태현 노수석 도예종 류재을 민병일 박래전 박봉규 박상운 박성호 박승희 박일수 박종철 박태순 배달호 서도원 석광수 송광영 송석창 신건수 신연숙 심광보 안동근 양용찬 여정남 오원택 오한섭 원태조 유재관 윤창녕 이경환 이길상 이덕인 이병렬 이상남 이석구 이성도 이영일 이원기 이정순 이한열 이현중 임종호 장이기 장현구 전용재 정경식 정상국 정상순 정태수 조경천 조정식 천덕명 최대림 최동 최성묵 최윤범 최태욱 하재완 한상근 허세욱 홍덕표 황보영국

더 이상 목격하고 싶지 않은 죽음들, 그러하기에 잊어서는 안되는 죽음들,
85명 열사들의 얼굴은... 대체 누구의 얼굴인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기에, 기억해야만 하는, 겹겹이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다.

글 사진 홍진훤



85장의 김진숙 얼굴을 차곡차곡 쌓아, 8500명으로 곱게 키운 뒤, 열기설기 엮어 만든 85호 크레인.
지난 겨울 크레인에 올랐던 그녀가 다시 겨울의 길목인데,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우리에게 8500명의 김진숙이 있다면,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있을까...
하지만, '김진숙이 없는 세상'이면 좋겠다.
목숨 걸고 싸우는 '김진숙이 필요없는 세상'이면 좋겠다.
저 높은 곳의 김진숙이 아니라, 땅을 딛고 평범하게 눈맞춤할 수 있는 그를 보고 싶다.
김진숙은 용접하고, 송경동은 시를 쓰고, 우리는 배를 타며 가만가만 시를 읽는 그런 세상, 도저히 불가능한 세상일까.

글 사진 노순택



85인의 初喪

애써 지우려하지 마세요.

나는 흔적입니다.

당신이 잊지 말아야 할 기억입니다.

여기, 죽음으로 비친 수많은 내가 있습니다.

여기, 죽음으로 비칠 수많은 당신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죽음을 마주해야 할까요.

얼마나 많은 당신을 외면해야 깨달을까요.

글 사진 김흥구



교수님, 벼랑에도 희망은 있는 건가요?

수업이 끝나면 부리나케 달려 갑니다.

돈 벌러요.

00:30까지, 시급 4320원, 일주일에 네 번.

공부하고 싶는데,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미친 등록금,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지난 방학 때 죽어라고 일해서 돈 벌어 학기 중엔 알바 안 하고 공부만 하려 했어요.

아이스크림 공장 알바가 시급이 썩다 해서 갔는데...

근데, 노가다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일주일 하다 그만 뒀어요.

하는 수 없이 학기 중에 또 알바를 합니다.

저도 공부해서 자격증도 따고, 취업도 하고 싶는데...

어쩔 수 없어요, 돈을 벌어야 대학을 다닐 수가 있으니까요.

대학은 나와야 하잖아요, 이 미친 정글에서 살아 남으려면요.

교수님,

벼랑 끝 절망에 희망은 있는 걸까요?

글 사진 이광수, 부산외국어대학교 러시아인도통상학부 교수

선관위, “유명인이 투표 권유 할 수 없다”

방침에 비판 봇물

지난 10월 26일 재보궐 선거기간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호한 기준의 투표독려운동 규제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SNS에서 투표 독려단속 기준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유명인이 투표권유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지침을 발표하는가 하면, “선거 당일 투표인증샷 역시 불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모호한 기준으로 SNS를 규제하려는 선관위 방침에 대해 유명인의 기준이 무엇이나며 비판하며 인증샷 릴레이 붐이 불기도 하였다. 선관위의 이러한 방침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불렀고, 이에 선거법 개정운동 움직임도 일고 있다.

반인권적인 강제퇴거 금지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운동

반인권적인 강제퇴거를 금지하고, 거주민들의 주거권과 재정착의 권리를 보호하는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강제퇴거금지법은 주거권 보장, 거주민의 재정착 권리 보장, 강제퇴거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 금지, 야간·약천후·동절기 등의 강제퇴거 금지, 개발사업 시행계획 수립 시 세입자를 포함하여 4분의 3 이상의 동의 필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는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을 위해 현재 1만인 선언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투쟁하던 김진숙 309일

만에 땅을 밟아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85호 크레인 고공농성 시작한 지 309일째 되던 11월 10일, 땅으로 내려왔다. 한진중공업 사측과 노조가 벌인 협상이 타결되면서 김진숙과 크레인 중간에서 농성하던 노동자 3인도 농성을 마쳤다. 4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았다. 희망버스 승객들은 한진중공업 사측이 ‘1년 후 재고용’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지켜볼 것이다. 11월 19일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을 투쟁승리 잔치도 벌일 예정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리해고 철퇴를 위한 연대투쟁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온라인게임 섯다운제” 헌법소원 제기

지난 10월 28일 온라인 게임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섯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11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밤12시에서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차단하는 섯다운제는 기본권 침해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청소년과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섯다운제가 행복추진권 및 교육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10만

서명운동 일어

‘청소노동자에게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단은 2011년 상반기 서울 지역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현장 청소노동자의 의견을 모아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21개의 제도개선 요구안을 만들어 제출했다. 9월 29일 국회에 입법청원했으며, 청소노동자 개선을 바라는 시민들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10만 장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반대하는

촛불문화제 연일 열려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행보가 빨라지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농민, 서민의 이해는 고려하지 않은 채 체결만을 강조하고 있어 국회 앞에서는 연일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독소조항이 여천해 15년간 농가피해액이 12조에 이를 뿐 아니라 의약품 가격 상승 등 국민 전체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국회에 비준 반대를 촉구하는 범국민대회 및 촛불문화제를 국회 앞에서 열고 있다.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경찰은 물대포를 쏘더니 대검찰청 공안부는 FTA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구속 수사 방침을 밝혔다. 연제점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지.

인권위 점거농성한 장애인권활동가 4명, 징역

1년 구형

검찰은 작년 12월 인권위 건물에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퇴진을 요구하면서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박경석 공동대표를 비롯한 4인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인권위 설립 이래 인권위 점거농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인권옹호자들과 인권침해를 받은 사람들

이 약자의 편에 서야 할 인권위에 가서 항의하는 일은 자주 있었다. 항상 기카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현병철 체제, 어디까지 가려나?

대학입시 거부 선언 잇달아

대학입학을 85%가 넘는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다니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당당한 사람들이 있다. 대학을 다니지 않으면 인생이 무너질 거라고 겁박하는 사회에서 청소년 인권활동가들이 대학입시가 있는 11월 10일 대학거부 선언을 하였다. 입시 위주의 교육과 서열화된 대학 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대학거부/대학입시 거부 선언자들의 등장은 다른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의 몸짓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

낙태 처벌 위한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

낙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이 11월 10일 있었다. 이번 변론은 6주된 태아를 낙태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산사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된 형법 270조 1항은 출산을 원하지 않는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임신부의 인권을 침해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에 따른 절차다.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몸을 통해 진행되는 과정으로 여성 고유의 경험이자 그 선택은 다른 누가 대신할 수 없는 여성의 중요한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강정마을에선 취재기자도 감금, 폭언

평화를 염원하는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의 해군 기지건설 반대투쟁에 해군과 경찰은 초법적 폭력을 일삼고 있다. 해군은 제주의회와 제주도가 반대하는 구럼비 바위 실험 발파를 6회에 걸쳐 하는 것도 모자라 불법 폭력행위를 취재하던 기자들도 연행, 감금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강정에서 머물며 취재해 온 미디어충청 정재은 기자를 7일 연행하여 1시간 40분 감금하면서 성희롱 발언에 욕설까지 퍼부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정 기자의 거취를 알 수 없었던 주위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했다. 인권위는 이번에 또 어떤 태도를 보이려나~.